

발 간 등 록 번 호
11-1450000-000035-01

한 · 베트남 FTA 상세설명자료

2015. 5

관계부처 합동

대한민국과 베트남간의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한·베트남 FTA 상세설명자료



※ 동 설명자료는 한-베트남 FTA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협정문의 주요 내용 위주로 정리되었으며 자료상의 용어는 협정상의 법률적 용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목 차 C/O/N/T/E/N/T/S

1. 서문, 일반규정	1
2. 내국민 대우 및 상품시장접근	5
3.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29
4. 통관 및 무역원활화	39
5.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43
6.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TBT)	47
7. 무역구제	51
8. 서비스 무역	55
9. 투자	69
10. 전자상거래	79



11. 경쟁	81
12. 지재권	85
13. 경제협력	93
14. 투명성	95
15. 분쟁 해결	97
16. 예외	101
17. 제도 및 최종규정	103



1. 서문 / 일반규정

서문 주요 내용

■ 서문은 협정의 기본정신과 원칙에 대한 선언적 내용 포함

- 양국의 긴밀한 관계, 경제협력 기반 강화, 무역·투자 장벽 제거, 사업환경 증진, WTO 및 한-아세안 FTA상의 권리·의무 존중 등

일반규정 주요 내용

■ 일반규정에서는 자유무역지대의 창설, 목적, 다른 협정과의 관계, 의무의 범위, 일반 정의 등을 규정

■ 자유무역지대의 창설

- 양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24조 및 GATS 제5조에 합치되게 자유무역지대를 창설

■ 목적

- GATT 제24조에 합치되도록 상품교역을 실질적으로 자유화
- GATS 제5조에 합치되도록 서비스교역 및 투자를 실질적으로 자유화
- 양국의 경제에서의 경쟁, 특히 양국 간 경제관계 관련 경쟁 증진
- 지식재산권에 대한 충분하고 효과적인 보호
- 양 당사국이 합의한 분야에서 협력 증진을 위한 틀 수립

▣ 다른 협정과의 관계

-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기존 협정상의 권리 및 의무 재확인
- 상품, 서비스, 투자, 인(人)에 대하여 이 협정보다 유리한 대우를 제공하는 기존의 국제법적 의무를 준수
- 협정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이 협정과 다른 협정 간 불합치가 있을 경우 당사국 간 상호 원만한 해결을 위해 즉시 협의

▣ 의무의 범위

- 양 당사국은 지방정부 및 중앙·지방 정부로부터 권한 행사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 이 협정을 준수할 것을 보장

▣ 일반 정의

- 협정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관세(customs duties), 일(days), 기업(enterprise), 조치(measure), 국민(national), 영역(territory) 등 2개 이상의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규정
- 국민(national)의 정의
 - 한국 : 「국적법」 상 대한민국의 국민
 - 베트남 : 베트남 헌법과 「베트남 국적에 관한 법」 상 베트남의 시민인 모든 인(人)
- 영역(territory)의 정의

한국	베트남
1) 한국 주권 하의 육지, 해양 및 상공	1)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베트남이 주권,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본토와 섬을 포함한 영토, 내수, 영해, 영역 위의 상공,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 및 그 천연자원을 포함한 해양지역
2) 한국이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부도양을 포함한 해양지역	

● 관세(customs duties)의 정의

- 모든 관세 또는 수입세와 모든 형태의 추가세 또는 추가금을 포함하여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부과금을 포함

※ 관세에서 제외되는 항목

- ① 동종의,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또는 대체가능한 당사국의 상품에 대하여, 또는 그 상품으로부터 수입 상품의 전체 또는 부분이 제조되거나 생산된 상품에 대하여 1994년도 GATT 제3조제2항에 합치되게 부과되는 내국세에 상당하는 부과금
- ② 제7장(무역구제)에 합치되게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 ③ 제공된 서비스의 비용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수입과 관련된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
- ④ 수입수량 제한 또는 관세율 할당의 운영에 관한 모든 입찰제도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서 수입품에 제공되거나 징수되는 할증금, 또는
- ⑤ 세계무역기구의 「농업에 관한 협정」에 따라 행하여진 모든 농업 긴급수입 제한 조치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2. 내국민 대우 및 상품시장접근

개요

- 관세 인하 또는 단계적 철폐, 관세 인상 또는 새로운 관세 도입 금지(standstill) 등 상품의 시장접근 관련 원칙과 의무사항은 협정문에 규정하고, 품목별 관세인하 또는 철폐 일정 및 양허유형은 부속서에 규정
- 무역 관련 비관세조치의 투명성 보장의무 규정

상세내용

1) 내국민 대우 및 수출입제한금지 (제2.2조 및 제2.8조)

- 당사국은 1994 GATT 제3조 및 그 주해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대해 내국민 대우를 부여 (제2.2조)
- 당사국은 WTO상 권리와 의무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의 수입 또는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한 수출 및 수출용 판매에 대해서 금지 또는 제한 부과 금지 (제2.8조)

2) 관세 인하 또는 철폐 및 현행유지 (제2.3조 및 제2.4조)

▣ **부속서에 규정된 일정에 따라 각 품목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인하 또는 철폐 (제2.3조)**

- 일방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품목별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가속화를 위해 협의할 의무를 부여

▣ **관세 인상 및 신규 관세 도입을 금지(standstill) 하여 협정 발효 후 시장 장벽이 높아지는 상황 방지 (제2.4조)**

- 단, 일방적 협정 세율 인하 후 다시 협정에 합치되는 수준까지 재인상하거나 WTO 분쟁해결기구가 허용한 관세유지, 인상은 허용

(3) 일시 반입 상품에 대한 면세(제2.5조) 및 일부 상품에 대한 면세(제2.7조)

▣ **양국은 원산지에 관계없이 일부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 일시 반입 허용 (제2.5조)**

※ 일시 반입 대상 상품

- 일시 입국의 자격을 갖춘 인(人)의 영업활동 또는 직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 장비(언론매체 또는 텔레비전을 위한 장비, 소프트웨어, 방송 및 영화촬영 장비를 포함)
-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상품
- 상업용 견본품과 광고물
- 스포츠용으로 반입되는 상품

▣ **양국은 무시할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 및 인쇄된 광고물에 대해 원산지와 관계없이 무관세 반입을 허용 (제2.7조)**

4 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면세 (제2.6조)

- 양국은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자국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일시적으로 수출된 후 재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 적용

※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해 그 상품을 수출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리 또는 개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 또는 수리 또는 개조가 그 상품의 가치를 증가시켰는지 여부와 무관

5 수입 허가 (제2.9조)

- 협정 발효 후 30일 이내에 기존의 수입허가 절차를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

- 가급적 새로운 절차 또는 변경사항이 발효하기 최소 20일전, 신규 수입허가 절차 도입 또는 변경시 정부 공식 웹사이트에 사전 공표

6 무역 관련 비관세조치 (제2.11조)

- 당사국간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조치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양자간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그러한 효과를 가지는 어떠한 조치도 준비, 채택, 적용되지 않도록 보장

7 국제수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제2.13조)

- 당사국이 심각한 국제수지 및 대외적 금융 곤란에 처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1994 GATT의 국제수지 규정에 관한

양해를 포함한 1994 GATT에 따라 제한적인 수입조치를 취할 수 있음. 단, 그러한 조치 채택 시 즉시 다른 쪽 당사국과 협의

8) 상품무역위원회 (제2.14조)

▣ 각 당사국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상품무역위원회 설치

- 일방 당사국 또는 공동위원회 요청시 상품무역위원회 개최

▣ 상품무역위원회의 기능은 ▲ 관세 인하 또는 철폐 가속화를 포함한 사안 협의 등 양국간 상품무역 증진, ▲ 비관세조치 등 상품무역 장벽에 대한 검토 등을 포함

상품양허 상세내용

▣ 한·베트남 FTA는 양국간에 기발효 중인 한·아세안 FTA(2007.6월 발효)를 토대로 협상을 진행

- 한·베트남 양국간에는 한·아세안 FTA를 통해 수입액 기준, (한) 91.7%-(베) 86.3%의 자유화 기탈성
- 한·베트남 FTA는 한·아세안 FTA상 관세철폐 대상이 아닌
민감·초민감품목(관세감축, TRQ 또는 양허제외 품목)을 대상으로
협상을 추진, 추가 자유화 달성
 - 협상 대상: 한·아세안 FTA의 민감·초민감품목
(한) 1,063개(4.7억불) - (베) 1,226개(21.2억불)¹⁾

1) 이하 상품양허 관련 통계는 아래 기준으로 작성

- 한국: HS 2012 (10단위 기준)
- 베트남: HS 2012 (8단위 기준)

- 추가 자유화(수입액 기준) : (한) 91.7% → 94.7%(+3%p)
(베) 86.3% → 92.4%(+6.1%p)

※ 한-아세안 FTA 자유화 품목 + 한-베 FTA 추가 자유화 품목

- 수입액 기준 : (우리) 94.7%, (베트남) 92.4%
- 품목수 기준 : (우리) 95.4%, (베트남) 8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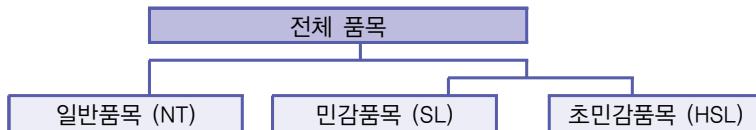
▣ **한-베트남 FTA에서 양측이 추가 자유화하기로 합의한 품목은 협정
발효 후 15년 이내 관세철폐**

- 우리는 추가 자유화 품목(TRQ를 제외한 499개 품목) 중 천연꿀 · 팔 · 고구마전분 등 3개 품목 제외하고, 모두 10년내 철폐
- 베트남은 추가 자유화 품목(272개) 중 자동차 부품 3개를 제외하고 모두 10년내 철폐

▣ **한-베트남 FTA는 상생형 FTA를 위한 수출과 투자의 선순환 유도,**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베트남 시장내 우리
기업들의 경쟁조건 개선 등을 통해 양국간 경제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

한-아세안 FTA상 양국의 관세철폐 스케줄

■ 한-아세안 FTA 상품 양허 구성



* 베트남은 후발 아세안 가입국(CLMV: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베트남)으로서 한-ASEAN FTA 상품무역협정상 여타 아세안 회원국에 비해 느린 관세철폐 스케줄 적용대상

■ 일반 품목

- 우리 : 2010년에 관세철폐 완료(2010.1.1일 기준 무관세)
- 베트남 : 품목수 기준
 - 2015년에 90% 관세철폐 (2015.1.1일 기준 무관세)
 - 2016년에 95% 관세철폐 (2016.1.1일 기준 무관세)
 - 2018년에 100% 관세철폐 (2018.1.1일 기준 무관세)

■ 민감 품목

SL	민감품목군 상한선	양 허 내 용
우리	모든 관세품목의 10%, 그리고 2004년도 총수입액의 10%	2012.1.1일까지 20%로 인하 2016.1.1일까지 0~5%로 인하
베트남	모든 관세품목의 10%, 그리고 2004년도 총수입액의 25%	2017.1.1일까지 20%로 인하 2021.1.1일까지 0~5%로 인하

■ 초민감 품목

HSL	초민감품목군 상한선	양 허 내 용
우리	HS 6단위 200개 혹은 당사국이 선택한 HS단위의 모든 관세품목 수의 3%, 그리고 총수입액의 3%	A: 2016.1.1까지 관세율을 50%(절대값)로 인하
		B: 2016.1.1까지 2005년 MFN 관세율에서 20% 이상 감축
		C: 2016.1.1까지 2005년 MFN 관세율에서 50% 이상 감축
		D: TRQ
		E: 양허 제외
베트남	HS 6단위 200개 혹은 당사국이 선택한 HS단위의 모든 관세품목 수의 3%	A: 2021.1.1까지 관세율을 50%(절대값)로 인하
		B: 2021.1.1까지 2005년 对한 관세율에서 20% 이상 감축
		D: TRQ
		E: 양허 제외

〈 한-베트남 FTA 전체 상품 양허수준 비교 〉

구 分	한국				베트남			
	품목수(개)	2012 對 베수입액(천불)			품목수(개)	2012 對 한수입액(천불)		
전 체	12,232		5,717,642			9,471		15,494,076
한-아세안 FTA	11,169	91.3%	5,244,642	91.7%	8,245	87.1%	13,375,246	86.3%
즉시철폐 (유무관세 포함)	91	0.7%	72,330	1.3%	65	0.7%	179,932	1.2%
3년 철폐	216	1.8%	12,931	0.2%	16	0.2%	296,688	1.9%
5년 철폐	134	1.1%	43,140	0.8%	47	0.5%	19,070	0.1%
7년 철폐	7	0.1%	2,998	0.1%	29	0.3%	16,747	0.1%
8년 철폐	-	-	-	-	6	0.1%	8,137	0.1%
10년 철폐	48	0.4%	40,195	0.7%	106	1.1%	405,553	2.6%
15년 철폐	3	0.02%	242	0.004%	3	0.03%	11,173	0.1%
소 계	499	4.1%	171,836	3.0%	272	2.9%	937,301	6.1%
총합계	11,668	95.4%	5,416,478	94.7%	8,517	89.9%	14,312,547	92.4%

▣ 한–아세안 FTA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호주의 제도는 한–베트남 FTA에 도입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對베트남 시장접근 실질적 개선

한–아세안 FTA 상호주의 제도(Reciprocal Arrangement)

- 수출국의 민감품목에 대해, 수입국이 해당 품목을 일반품목으로 양허했더라도 한–아세안 FTA에 따른 양허관세 혜택 배제 가능
 - ☞ 한국산 녹차(한국의 초민감품목)를 베트남에 수출할 경우, 베트남은 녹차를 일반품목(양허관세율 0%)으로 양허했더라도 한국산에 양허관세인 0%를 적용하지 않고, 자국의 MFN 관세율을 적용 가능
 - 2015.4월 현재, 한국, 인니, 태국,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6개국)에서 상호주의 제도 운영
-
- 상호주의 제도로 인해 베트남의 한–아세안 FTA상 협정세율을 적용받지 못했던 566개 품목 중 560개의 경우, 한–베트남 FTA 발효 시부터 협정세율(0~10%)이 적용되고, 2018년에 관세철폐 완료(2018.1.1부터 모든 품목 무관세)
 - 다만, 닭고기 관련 6개 품목의 경우, 베트남의 국내적 민감성을 반영하여 관세철폐 기간 일부 연장
- ※ 발효일부터 8년간 균등 철폐: 3개 세번(기준세율 40%, 8년 선형철폐), 3개 세번(기준세율 20%, 8년 선형철폐)

〈한–아세안 FTA상 베트남의 상호주의 제도 적용 현황(2015년 기준)〉

구 분	품목수 (개)	2012 베트남의 對한수입액 (천불)	주 요 품 목
공 산 품	61	1,070,622	시멘트 클링커, 디젤연료, 유기화학품(이염화에틸렌, 염화비닐, 부탄올, 아세톤, 초산에틸, 초산비닐 등), 질소비료, 비누, 화학공업생산품, 합성수지, 선박추진용 엔진, 블베어링, 건전지 등
농 산 물	348	27,660	닭고기, 유아용조제식료품, 사료용조제품, 밀크와 크림, 사과(신선), 참기름과 그 분획물, 딸기(신선), 펠릿, 쌀(정미), 감(신선), 버터, 감자(신선/냉장), 포도(신선), 인삼, 오렌지쥬스, 사과쥬스, 곡물플레이크, 녹차, 옥수수전분, 글루(glue), 기타채소, 텍스트린과 변성전분 등
수 산 물	146	5,613	뱔장어(활어), 넙치(신선·냉장), 눈다랑어(신선·냉장), 대구(냉장), 황새치(냉동), 명태(냉동), 오징어(냉동), 게(냉동), 조개(냉동), 수산물 가공품 등
임 산 물	11	754	섬유판, 합판, 블록보드, 고밀도화목재 등
총 합 계	566	1,104,650	

- * 한–아세안 FTA 이행위에서도 한–베트남 양자간 상호주의 제도 폐지 논의가 진행 중
 - 상호주의 폐지 원칙에 대해서는 합의하고 관련 절차 진행 중이나 한–아세안 FTA 협정 개정 등이 완료되어야 상호주의 폐지의 법적 효과 발생
- ☞ 한–베트남 FTA에서 한–베트남 양국간 상호주의 폐지에 대한 사전적 법적 안정성을 확보

〈한-베트남 FTA 상품양허 양허단계별 주요 품목〉

우리 양허 주요 품목	품목수	양허 단계	베트남 양허	
			품목수	주요 품목
실장어(활어), 둠(치어), 능어(치어), 피조개 종때(활어/신선/냉장)	4	즉시 철폐 (무관세)	65	화물자동차, 펌프, 철근, 공기조절기, 기타정밀화학원료, 기타철강금속제품, 냉연강판, 복합비료, 봉강, 사료, 아연도강판, 열연강판, 의약품, 원유 등
방모사, 소모사, 앙모사, 방모직물, 순면사, 생지, 기타면직물, 폴리에스터사, 탄성사, 기타인조섬유장섬유사, 남성용 바지/아우터셔츠, 블라우스, 티셔츠, 스웨터, 양말, 코트 및 자켓, 신사복 상의, 여성용 수트/자켓/바지/스커트, 점옷, 브래지어, 손수건, 스파프, 장갑, 패티클보드, 섬유보드, 블록보드 등	87	즉시 철폐 (유관세)	-	-
건전지, 경유 등 석유제품, 기타고무제품, 기타농산기공품, 석유제품, 시멘트, 자전거, 자전거부품, 삼푸, 헤어린스, 필름, 쇠고기(식용설육/신선/냉장), 허(냉동), 간장(냉동) 등, 닭고기(절단육(냉동)), 발효유, 치즈, 양송이버섯, 포도당, 과당, 맥아축출물, 국수, 곡류기공품, 스위트콘, 라이스페이퍼, 차/마태 조제제품, 방어(신선/냉장), 넘치(냉동), 가지마(냉동), 피조개(신선/냉장), 갓장어(활어), 가자미(신선/냉장), 건조어란, 제재목 등	216	3년 철폐	16	기타영사기, 나일론직물, 부직포, 순면직물, 재생단섬유직물, 폴리에스터단섬유직물, 혼방면직물, 원동기 등
저/고밀도에틸렌, 에틸렌초산비닐, 선박용압축점화식 연진, 선박용 부품, 고구마(냉동), 과일주스, 감자(조제/냉동), 잼, 두부, 항미용조제제품, 기타소스류, 주류, 당면, 미과, 인삼음료, 캐슈넛(미탈각/탈각), 가오리(냉동), 복어(냉동), 피조개(냉동), 성개(냉동), 조제분어, 조제소스라, 조제연체동물, 가리비(과조개/기타), 제채류, 패티클보드, 섬유판, 합판, 기타목재류, 건죽용목제품 등	134	5년 철폐	47	음극선관모니터, VCR, 계전기, 골판지원지, 기타생활용품(프레스파스너), 기타식탁용구, 기타유리제품, 기타직물, 순면직물, 편직물, 혼방면직물, 유아용조제식료품, 무선통신기기부품, 믹서, 변압기, 스위치, 신발부분품, 자동차부품, 전동기, 전선, 전신기기, 카스테레오, 컴포넌트, 합성수지, 항공기부품 등
기타전선, 통신용전선, 합판	7	7년 철폐	29	가열난방기(철강제 조리기구), 커피탕기, 비금속제 경첩, 보온밥통, 변압기, 볼트/너트, 선재, 원동기, 의약품, 자전거부품, 전동기, 철도차량부품, 항공기부품 등
-	-	8년 철폐	6	닭고기
베어링, 열대과일(구아비/망고/강고스틴/바나나/파인애플 등), 기타 과일주스, 난초/국화 등 화훼, 마늘(건조/냉동), 생강/미분쇄/미파쇄, 건조/기타), 생강(분쇄/파쇄, 신선/건조/기타), 호도(탈각/신선/건조), 둠기타(냉동), 전갱이(냉동), 틸리파이(냉동), 섬유판, 합판 등	48	10년 철폐	106	화장품(스킨로션/파우더 등), 가열난방기, 가청주파증폭기, 건축용목제품, 계전기, 스위치, 모니터, 기타고무제품, 전기밥솥, 냉장고, 라디오, 동조기공품, 복합비료, 세탁기, 승용차(3,000cc 초과), 화물자동차(5톤~20톤), 안전유리, 아연도강판, 에어컨, 원동기, 자동차부품, 전선, 전자레인지, 식기세척기, 축전지, 칼라TV, 크라프트지, 타이어, 펌프, 토스터기, 필름, 폴리에스터단섬유직물, 순면직물, 합성수지 등
고구마전분, 천연꿀, 팥(종자옹외)	3	15년 철폐	3	자동차부품(기어박스)
499	소계	272		
새우(냉동/가공)	7	TRQ	-	-
506		272		

분야별 세부 상품양허

1) 공산품 (임산물 포함)

▣ 우리는 한-베트남 FTA를 통해 한-아세안 FTA에서 관세철폐*되지 않고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236개 품목 중 235개**에 대해 추가 시장 개방(모두 10년내 관세철폐)

- 우리의 對베트남 주요 수입 품목인 의류·섬유(관세율 8~13%) 등은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 진출하여 생산 후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것이 다수를 차지, 한-베트남 FTA로 인한 실질적 추가 개방 효과는 제한적

* 한-아세안 FTA에서 공산품 대다수(품목수 96.5%, 수입액 97.2%)를 일반품목으로 양허(2010년 관세철폐 완료)

** 전통 민감품목인 초산에틸(HS 291531000)만 미양허

▣ 베트남은 한-아세안 FTA에서 상대적으로 개방도가 낮았던 주요 공산품에 대해 한-베트남 FTA를 통해 추가 시장 개방

- 우리의 對베트남 주요 수출 품목인 섬유·직물 뿐 아니라,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가전화장품자동차부품 등의 관세철폐를 통해 우리 업계의 對베트남 수출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가전제품 중 세탁기(25%), 냉장고(25%), 에어컨(30%), 전기밥솥(20%)은 10년 철폐, 믹서(25%)는 5년 철폐, 화장품(10~25%)은 10년 철폐

- 자동차부품(7~25%)은 5~15년내 철폐, 차량용 엔진(5~25%)은 3년~7년 철폐, 화물차(5톤~20톤; 30%) 및 승용차(3,000cc 이상; 68%)의 일부 품목은 10년 철폐

- 합성스테이플섬유직물, 면직물 등 섬유제품(12%)은 발효 후 3~10년내 철폐

- 아연도강판(5%), 동조가공품(5~10%), 철강제가공품(10%) 등은 7~10년내 철폐

▣ 임산물의 경우, 목재류 주 수입국가인 베트남과의 FTA에서 추가적인 시장 개방을 통해 양국간 교역·투자 증진 기회 확보

- 다만, 섬유판합판제재목 등 목재류 주요 민감품목(47개)를 양허제외²⁾하여 국내 관련 산업 피해를 최소화

2) 한-베트남 FTA에서 '양허제외'는 한-아세안 FTA 양허 유지를 의미(이하 동일한 의미로 사용)
- 양허 제외(한-아세안 FTA 양허 유지)된 품목의 경우에도 기준세율 유지 의무에 따라 협정상 합의한 기준세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관세율 인상 불가

〈 한–베트남 FTA 공산품 (임산물 포함) 양허수준 비교 〉

양허 단계	우리 양허				베트남 양허			
	품목	비중	수입액(천불)	비중	품목	비중	수입액(천불)	비중
한–아세안 FTA	9,644	96.5%	4,728,181	97.2%	6,678	85.6%	13,209,686	86.2%
즉시 철폐	87	0.9%	72,330	1.5%	64	0.8%	179,932	1.2%
3년 철폐	155	1.6%	8,713	0.2%	16	0.2%	296,688	1.9%
5년 철폐	45	0.5%	14,086	0.3%	46	0.6%	19,070	0.1%
(5년내)	287	2.9%	95,128	2.0%	126	1.6%	495,691	3.2%
7년 철폐	7	0.1%	2,998	0.1%	29	0.4%	16,747	0.1%
10년 철폐	6	0.1%	7,328	0.2%	106	1.4%	405,553	2.6%
(10년내)	300	3.0%	105,454	2.2%	261	3.3%	917,991	6.0%
15년 철폐					3	0.04%	11,173	0.1%
소계	300	3.0%	105,454	2.2%	264	3.4%	929,164	6.1%
양허제외	48	0.5%	29,457	0.6%	857	11.0%	1,177,715	7.7%
소계	348	3.5%	134,912	2.8%	1,121	14.4%	2,106,879	13.8%
합계	9,992	100%	4,863,093	100%	7,799	100%	15,316,565	100%

* 품목수 : (한국) HS 2012, (베트남) HS 2012 기준

* 수입액 : 양측 모두 2012년 기준

〈 한-베트남 FTA 공산품(임산물 포함) 양허유형별 주요 품목 〉

양허 단계	우리 양허		베트남 양허	
	주요 품목	품목수	주요 품목	품목수
즉시 철폐 (유무 관세)	(공산품) 방모사, 소모사, 양모사, 병모직물, 기타면사, 순면사, 생자, 기타연직물, 폴리에스터사, 탄성사, 기타 인조섬유장섬유사, 바지스커트, 남성용 바지, 남성아웃도어셔츠, 블라우스, 티셔츠, 스웨터, 일상, 코트 및 자켓, 신사복 상의, 남성바지, 여성용 수트, 여성용 자켓, 여성용 바지/스커트, 짐짓, 브래지어, 손수건스카프, 정갑 등 (임산물) 파티클보드, 섬유판, 블록보드 등	87	(공산품) 원유, 기타정밀화학원료(리신과 그 에스테르), 의약품(비타민), 복합비료, 강반제품, 열연강판, 이연도강판(기타), 냉연강판, 불강, 철근, 알루미늄조가공품, 기타철강금속제품, 퀘프, 공기조절기, 화물자동차 등	64
3년 철폐	(공산품) 시멘트, 클링커, 백시멘트, 포트랜드시멘트, 기타 수경성시멘트, 자동차부발유, 기타 경질 석유와 조제제품, 기타석유제제품, 등유, 제트유, 겔유, 벙커유(A/B/C유), 기타중유, 윤활유, 수산화나트륨, 이염화에탄, 염화비닐, 기타석유화학제품(1-프로판올, 1-부탄올, 옥탄올, 아세톤, 초산 등), 초산비닐, 젤소비료, 농약원제, 비누, 삼푸, 헤어린스, 필름, 윤활유첨가제 등 기타정밀화학제품, 폴리프로필렌, 프로필렌 공중합체, 염화비닐수지, 폴리아이드수지, 타일, 세면대, 수세식변기, 팬유리, 동선, 선박주진용 엔진, 건전지, 전력용전선, 자전거, 자전거부품 등 (임산물) 제제목(마호가니/포플러 등)	155	(공산품) 순면직물, 혼방면직물, 나일론직물, 폴리에스터단섬유, 재생단섬유직물, 부직포, 편직물, 기타 영사기, 원동기 등	16
5년 철폐	(공산품) 저밀도 에틸렌, 고밀도 에틸렌, 에틸렌초산비닐, 선박용압축점화식 엔진, 선박용 부품 등 (임산물) 제제목(상나무/미송/적송/전나무 등), 파티클보드, 섬유판, 합판, 기타목재류, 건축용목제품 등	45	(공산품) 합성수지(초산비닐 중합체), 골판지원지, 순면직물, 혼방면직물, 파이서널직물, 기타 직물, 편직물, 신불부분품(바깥바닥과 뒷곳), 기타유리제품, 기타식탁용구(스푼, 포크 등), 기타생활용품, 항공기부품, 전동기, 변압기, 믹서, 전신기기, 가정주방용품, 음향증폭세트, 기타음성기록 또는 생기기, VCR, 카스테레오, 음극선관 모니터, 흡백 TV, 무선통신기기/부품언데나 및 그 부분품, 계전기, 스위치, 전선, 자동차부품(로드휠과 그 부분품/부속품, 방열기), 기타생활용품(프레스 파스너) 등	46
7년 철폐	(공산품) 기타전선, 통신용전선 등 (임산물) 합판 등	7	(공산품) 의약품(페니실린 등), 선제, 볼트 및 너트, 가열난방기(철제조리기구/부분품), 비금속제 경첩, 원동기, 철도 차량부품, 항공기부품, 전동기, 변압기, 커피탕기, 보온밥통, 자전거부품 등	29
10년 철폐	(공산품) 볼베어링 (임산물) 섬유판, 합판 등	6	(공산품) 기타정밀화학원료(오르토포탈산디옥틸 등), 의약품, 복합비료, 화장품(매니큐어/가루/스킨로션/반창창 크림/ 목욕용품/기타), 헤어린스, 비누, 합성수지, 필름, 타이어(버스·화물차용)(1), 기타고무제품(셀룰라고우 제품), 신문용지, 크래프트지, 순면직물, 혼방면직물, 폴리에스터 단섬유직물, 부직포, 안전유리, 베미러, 이연도강판, 가열난방기(철강제 조리기구), 동조기구품, 화장용품(매니큐어용 세트와 용구), 기타생활용품(잠금장치), 원동기, 퀘프, 에어컨(청정이나/비청정/일체형이나/분리형), 낭장고/분리된 외부문을 갖춘 것, 압축식기, 가정용 식기세척기, 원전자동 세탁기(10kg 이하/10kg초과), 전동기, 변압기, 축전지, 전기다리미,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토스터, 보온밥통, 가정주파증폭기, 전기음향증폭장치, VCR(기타), 웹케이블, 텔레비전카메라, 라디오, 기타모니터(천연색), 칼라TV, 치단기, 계전기, 스위치, 전선, 승용차(4륜/3,000cc 초과), 화물자동차(5톤~20톤), 자동차부품(서스펜션, 클러치, 헌틀 등), 기타생활용품(프레스파스너, 슬라이드파스너), 화장용품(분침/때드) (임산물) 건축용목제품 등	106
15년 철폐			(공산품) 자동차부품(기어박스)	3
소계		300		264

〈 한–베트남 주요 수출입 공산품(임산물 포함) 양허 비교 〉

순위	우리 양허 (對베트남 주요 수입품)				베트남 양허 (對한 주요 수입품)			
	품목명 (HS 10단위)	관세율 (%)	수입(천불) '12년	우리 양허	품목명 (HS 8단위)	관세율 (%)	수출(천불) '12년	베트남 양허
1	합판	10	12,589	양허 제외	휘발유	12	458,963	양허 제외
2	언더셔츠	13	10,388	즉철	열연강판(1)	0	115,967	즉철
3	합판	10	10,085	양허 제외	폴리에스테르스테이플섬유 직물(1)	12	83,129	10년 철폐
4	스웨터	13	9,836	즉철	폴리에스테르스테이플섬유 직물(2)	12	73,766	3년 철폐
5	남성 아우터셔츠(1)	13	7,920	즉철	폴리에스테르스테이플섬유 직물(3)	12	63,235	3년 철폐
6	남성 아우터셔츠(2)	13	7,331	즉철	기타생활용품(슬라이드 파스너)	20	57,193	10년 철폐
7	제재목	5	6,661	5년 철폐	화물자동차(기타)	15	46,170	양허 제외
8	남성 셔츠	13	6,469	즉철	합성수지(아크릴로니트릴 –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	3	41,655	10년 철폐
9	바지 스커트	13	6,166	즉철	열연강판(2)	0	35,140	즉철
10	여성 바지스커트	13	6,157	즉철	연결부품	20	34,276	양허 제외
11	폴리에스터사	8	5,198	즉철	면직물	12	33,707	3년 철폐
12	티일	8	3,794	3년 철폐	동의 선 (copper wire)	10	32,823	10년 철폐
13	합판	8	3,593	5년 철폐	부직포	12	28,923	3년 철폐
14	제재목	5	3,555	양허 제외	기타유리제품	30	24,581	양허 제외
15	섬유판	8	3,435	10년 철폐	틸(tulle)과 그 밖의 망직물	12	24,363	양허 제외
16	합판	10	2,599	5년 철폐	나일론직물	12	19,824	3년 철폐
17	순면사	8	2,442	즉철	자동차부품	15	18,409	10년 철폐
18	질소비료	7	2,350	3년 철폐	H형강	10	18,400	양허 제외
19	합판	10	1,961	7년 철폐	차량추진용 엔진	5	17,264	3년 철폐
20	신사복상의	13	1,661	즉철	자동차부품	15	16,212	10년 철폐
	(20대 수입소계)		114,190		(20대 수입소계)		1,244,004	
	공/임산물 수입합계 (일반품목 포함)		4,863,093		공/임산물 수입합계 (일반품목 포함)		15,316,565	

* 대상 : 한–아세안 FTA 일반품목 제외한 민감·초민감품목

* 품목수 : (한국) HS 2012, (베트남) HS 2012 기준, 수입액 : 양측 모두 2012년 기준

* 관세율 : 기준세율을 의미

2) 농 산 물

■ 베트남은 한-아세안 FTA를 통해 이미 전체 농산물(1,284개) 중 91.8%(1,179개)를 일반품목으로 양허, 대다수 품목은 2016년, 여타 품목은 늦어도 2018년에 관세철폐 완료(2018.1.1부터 무관세)

- 한-아세안 FTA 상호주의 제도가 도입되지 않음에 따라, 우리 농산물의 對베트남 수출 경쟁력 확보 계기 마련
 - 한-아세안 FTA상 상호주의 제도 적용 농산물(2015.4월 기준, 348개) 중 342개 품목은 협정 발효시부터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0~10%) 적용되고, 늦어도 2018년에 관세철폐 완료(2018.1.1부터 무관세)
 - 다만, 닭고기 관련 6개 품목의 경우, 베트남의 국내적 민감성을 반영하여 관세철폐 기간 일부 연장
- * 발효시부터 8년간 균등 철폐 : 3개 세번(기준세율 40%, 8년 선형철폐), 3개 세번(기준세율 20%, 8년 선형철폐)
- 우리 수출유망품목인 유아용 조제식료품(20%)은 5년 철폐로 양허 개선, 사료용조제품(10%)은 무관세 유지
- 음료, 주류, 담배 등 97개 품목은 양허 제외

농산물 관련 한-베트남 현황

- (관세) 2012년(민감·초민감품목) · 2015년(일반품목) 기준 우리 농산물 평균 관세는 44.1%로 베트남의 평균 관세율 3.7%에 비해 높은 수준
- (교역) 베트남은 우리나라 농산물 수입액의 2.3%(7.3억불)를 차지하는 농산물 교역국으로서 우리나라 2014년 약 3.7억불의 적자를 기록
- * 농산물 對베 무역수지(백만불) : ('12)△289 → ('13)△239 → ('14)△374
 - 주요 수입품은 대두유, 커피, 기타과실, 후추, 쌀, 고추 등이며, 주요 수출품은 닭고기, 훈합조제식료품, 기타사료용조제품, 조제분유, 커피조제품, 기타베이커리제품 등

▣ 우리는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거나 한–아세안 FTA 민감품목 위주로 추가 개방하여 농산물 분야 부담 최소화 도모

- 한–아세안 FTA 민감초민감품목(525개) 중 122개(민감품목 88개, 초민감품목 34개)에 대해 추가 개방, 그 외 품목(403개)은 양허 제외

【식량작물】 쌀 및 쌀 관련 제품(16개)은 한–아세안 FTA에서는 양허 제외였으나, 한–베트남 FTA에서는 협정대상제외*로 변경

* 관세철폐 및 관세와 관련된 모든 의무의 적용 제외

- 고구마(신선 · 건조 · 냉장, 385%), 대두(종자용 · 사료용 · 콩나물용 등, 487%) 등은 양허 제외*, 팥(건조/기타, 420.8%)은 15년 철폐
- * 한–아세안 FTA에 따라 2016.1.1일, 2005년 MFN세율의 20% 감축

【축산물】 대부분 양허 제외

- 냉동 돼지고기(삼겹살, 기타 25%)는 10년 철폐, 소 식용설육(신선/냉장, 혜/냉동 18%), 닭고기(닭간/냉동, 기타설육/냉동, 20%)는 3년 철폐
- 천연꿀(243%)은 15년 철폐로 관세 철폐기간 장기화

【과실류】 국내 생산되는 주요 과일은 양허 제외

- 망고(30%), 파인애플(30%), 두리안(45%) 등은 10년 철폐
- 파인애플 주스(20%)는 5년 철폐, 과실혼합물(45~50%)은 10년 철폐

【채소·특작류】 고추(270%), 마늘(신선/냉장, 360%), 양파(신선/냉장, 건조, 135%)는 양허 제외

- 생강(건조, 377.3%)과 마늘(냉동 27%, 건조 360%)은 10년 철폐
- 인삼(수삼/홍삼/백삼, 222.8%, 754.3%)은 양허 제외*, 들깨(20%)는 3년 철폐

* 한–아세안 FTA에 따라 2016.1.1일, 2005년 MFN세율의 20% 감축

【가공식품】 김치(20%), 혼합조미료(45%)는 양허 제외

- 식품용 대두유(5%)는 5년 철폐, 고구마전분(241.2%)은 15년 철폐로 관세철폐기간 장기화
- 간장(8%) · 춘장(8%)은 5년 철폐, 위스키(20%) · 포도주 · 증류주(15%)는 5년 철폐

〈한-베트남 FTA 농산물 양허수준 비교〉

양허 단계	우리 양허				베트남 양허			
	품목	비중	수입액(천불)	비중	품목	비중	수입액(천불)	비중
한-아세안 FTA	1,086	67.4%	236,800	67.8%	1,179	91.8%	109,549	90.2%
즉시 철폐	-	-	-	-	1	0.1%	-	-
3년 철폐	35	2.2%	4,218	1.2%	-	-	-	-
5년 철폐	54	3.4%	18,866	5.4%	1	0.1%	-	-
(5년내)	89	5.5%	23,085	6.6%	2	0.2%	-	-
8년 철폐	-	-	-	-	6	0.5%	8,137	6.7%
10년 철폐	30	1.9%	9,763	2.8%	-	-	-	-
(10년내)	119	7.4%	32,848	9.4%	8	0.6%	8,137	6.7%
15년 철폐	3	0.1%	242	0.1%	-	-	-	-
(15년내)	122	7.6%	33,090	9.5%	8	0.6%	8,137	6.7%
양허제외	403	25.0%	79,295	22.7%	97	7.6%	3,814	3.1%
소계	525	32.6%	112,385	32.2%	105	8.2%	11,951	9.8%
합계	1,611	100%	349,185	100%	1,284	100%	121,500	100%

* 품목수 : (한국) HS 2012, (베트남) HS 2012 기준

* 수입액 : 양측 모두 2012년 기준

〈한-베트남 주요 수출입 농산물 양허 비교〉

순위	우리 양허 (对베트남 주요 수입품)				베트남 양허 (对한 주요 수입품)			
	품목명 (HS 10단위)	관세율 (%)	'12년 수입(천불)	우리 양허	품목명 (HS 8단위)	관세율 (%)	'12년 수출(천불)	베트남 양허
1	커피(복지 않은 것/ 카페인 제거 않은 것)	0	73,672	-	오리깃털(솜털 및 총전재용 깃털)	0	14,124	-
2	대두유 (조유/식품용)	0	61,018	-	솜털 및 총전재용 깃털(기타)	0	8,563	-
3	매니옥 칩(건조)	887.4	48,462	양허 제외	과당시럽 (전화당 제외)	0	8,275	-
4	변성 에틸알코올 및 기타 변성주정	0	19,113	-	기타 깃털(솜털 및 총전재용 외, 오리깃털 제외)	0	7,555	-
5	후추(건조/미분쇄)	0	16,391	-	닭고기(절단하지 않은 육(냉동))	40	7,083	8년 철폐
6	캔디	0	15,998	-	유아용 조제식료품(소麦용)	5	7,023	2018년 철폐
7	쐐미	5	13,822	양허 제외	오리깃털(솜털 및 총전재용 외)	0	5,189	-
8	조주정(알코올 용량 80% 이상)	10	11,971	5년 철폐	기타 대두유 출시 얻는 오일케이크와 유박	0	4,289	-
9	메현미	5	7,938	양허 제외	사료용 조제품(기타)	0	4,081	-
10	축우용 배합사료	0	6,664	-	면 (카드 또는 코윤한 것)	0	3,903	-
11	과실/견과류(냉동)	30	6,556	10년 철폐	음료(식이보조제)	5	3,678	
12	캐프시컴속 또는 피멘타속의 열매(냉동)	27	6,130	양허 제외	유지가공품(소트닝)	5	3,084	
13	커피조제품	0	5,264	-	젤라틴	5	3,041	
14	기타식물성생산품	0	4,831	-	인삼음료	5	2,865	
15	라이스페이퍼	8	3,313	3년 철폐	기타 사료	5	2,639	2018년 철폐
16	베이커리 제품	0	3,106	-	기타 맥아엑스	10	2,146	
17	설탕과자류	0	2,431	-	기타 버섯	5	2,117	
18	괴경의 분과 조분 (칡뿌리 이외 기타)	8	2,342	5년 철폐	기타 음료	5	1,771	
19	파스타	0	2,270	-	점착제	5	1,664	
20	계피	0	2,037	-	옥수수 전분	5	1,447	
	(20대 수입소계)		313,327		(20대 수입소계)		94,539	
	농산물 수입합계		349,185		농산물 수입합계		121,500	

* 대상 : 한-아세안 FTA 일반품목을 포함한 전 품목

* 품목수 : (한국) HS 2012, (베트남) HS 2012 기준, 수입액 : 양측 모두 2012년 기준

* 한/베트남 양허 : “-”로 표기된 경우, 한-아세안 FTA에 따라 일반품목으로 분류되어 우리의 경우 2010년에, 베트남의 경우 2015년에 관세철폐 완료

* 관세율 : 기준세율을 의미

〈한-베트남 FTA 농산물 우리 양허 유형별 주요 품목〉

구 分	주 요 품 목	품목수
한-아세안 FTA	커피(볶지않은 것), 대두유(식품용), 변성 에틸알코올 및 기타 변성주정, 후추(건조), 캔디류, 죽우용 배합사료, 계피, 비스킷, 라면, 조제하지 않은 파스타, 커피조제품 등	1,086
한-베트남 FTA 추가 시장 개방		122
즉시 철폐	-	-
3년 철폐	닭간, 양송이, 국수, 조란, 들깨, 곡분, 과당, 라이스페이퍼, 포도당, 캐라멜당 등	35
5년 철폐	대두유, 당면, 감자(조제저장/냉동), 두부, 맥주, 꼬냑, 보드카, 조주정 등	54
10년 철폐	돼지고기(냉동삼겹/기타), 망고, 마늘(냉동/건조), 구아바, 바나나, 생강(파쇄 건조/신선/기타) 등	30
15년 철폐	천연꿀, 팥, 고구마 전분	3
한-아세안 FTA 양허유지 (* 아래는 한-베트남 FTA 양허 카테고리에 따라 분류)		403
'16.1.1일부 관세 0~5%로 인하	당근, 레몬, 매실, 골분, 된장, 아스파라거스, 과당, 맥아당, 고추장, 양파(냉동), 참기름, 떨기(냉동), 호박(신선/냉장), 낙화생, 감자(냉동) 등	75
'16.1.1일부 관세 2005년 MFN세율의 20% 감축	쇠고기(기타), 닭고기, 오리고기, 감자, 밤, 잣, 대추야자, 포도, 복숭아, 단감, 메밀, 땅콩, 참깨, 인삼, 참기름, 분유, 설탕 등	196
'16.1.1일부 관세 2005년 MFN세율의 50% 감축	맥주보리, 걸보리, 쌀보리, 옥수수, 맥아, 오렌지주스, 덱스트린과 기타 변성전분 등	47
기준세율 유지*	고추, 양파, 녹차, 쇠고기, 닭고기, 피인애플, 감귤, 유장, 치즈, 사과, 배, 오렌지, 강낭콩, 메니옥, 메니옥 전분 등	69
협정대상제외**	벼, 메현미, 찰현미, 맵쌀, 찹쌀, 쇠미, 쌀가루 등	16
합계		1,611

* 한-베트남 FTA상 기준세율 유지 의무(양허 카테고리 “E”)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 한-아세안 FTA상 양허제외(양허 카테고리 “E”) 뿐 아니라 한-아세안 FTA상 관세 감축 의무를 이미 달성한 민감·초민감품목(양허 카테고리 일부 “SL”, “A”, “D”)도 포함

** 쌀 및 쌀 관련 16개 세번의 경우 한-아세안 FTA에서는 양허제외(양허 카테고리 “E”)였으나, 한-베트남 FTA상 협정대상제외(양허 카테고리 “R”)로 변경

3) 수산물

▣ 베트남은 한–아세안 FTA를 통해 수산물 모든 품목(388개 품목)을 일반품목으로 기양허

- 대다수 수산물은 이미 관세가 철폐되었고, 2018년까지 관세철폐 완료*
 - * 한–베트남 FTA에는 한–아세안 FTA 상호주의 제도가 도입되지 않음에 따라, 한–아세안 FTA 상호주의 적용 대상 수산물(146개)도 2018년까지 관세철폐 완료(2018.1.1부터 무관세) 예정
- 이를 통해, 對베트남 주요 수출품목인 황다랑어, 가다랑어, 오징어 등 전체 수산물에 대해 베트남 수출 기반 확대

▣ 우리는 한–아세안 FTA 민감초민감품목(190개) 중 84개(민감품목 63개, 초민감품목 21개)에 대해 추가 개방하고, 그 외 대다수 품목을 보호

- 주요 민감 수산물 125개 품목(교역액 기준 42.7%)에 대해 장기 관세철폐, 저율관세할당(TRQ) 및 양허 제외 등 보호수단 확보
- 주요 생산 어종인 오징어(냉동/건조/가공), 갈치(냉동), 멸치(건조), 다랑어(냉동), 명태(냉동), 꽃게(냉동) 등 총 106개 품목은 양허제외
- 수입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틸라피아(냉동), 연어(냉동), 전갱이(냉동), 다시마(염장) 등 12개 품목은 장기 관세철폐 기간 설정
- 특히, 베트남의 주력 수출 품목인 새우류 7개의 일정 물량에 한해 저율관세할당(TRQ)을 적용하고, 그 이상의 물량에 대해 현행관세(20%)를 유지하여 예외적 보호 수단을 확보

※ 국내 수입시장 점유율('12) : 새우살(냉동) 54%(1위), 새우류(가공) 46%(3위)

〈한-베트남 FTA 수산물 양허수준 비교〉

구 분	우 리 양 허				베 트 남 양 허			
	품목	비중	수입액(천불)	비중	품목	비중	수입액(천불)	비중
한-아세안 FTA	439	69.8%	279,660	55.3%	388	100%	56,011	100%
즉시 철폐	4	0.6%	—	—				
3년 철폐	26	4.1%	—	—				
5년 철폐	35	5.6%	10,188	2.0%				
(5년내)	65	10.3%	10,188	2.0%				
10년 철폐	12	1.9%	23,104	4.6%				
(10년내)	77	12.2%	33,292	6.6%				
TRQ	7	1.1%	142,487	28.2%				
양허제외	106	16.9%	49,925	9.9%				
소계	190	30.2%	225,704	44.7%				
합계	629	100%	505,364	100%	388	100%	56,011	100%

전체 수산물
2018.1.1 무관세(관세철폐 완료)

* 품목수 : (한국) HS 2012, (베트남) HS 2012 기준

* 수입액 : 양측 모두 2012년 기준

〈한-베트남 주요 수출입 수산물 양허 비교〉

순위	우리 양허 (對베트남 주요 수입품)				베트남 양허 (對한 주요 수입품)			
	품목명 (HS 10단위)	관세율 (%)	수입(천불) '12년	우리 양허	품목명 (HS 8단위)	관세율 (%)	수출(천불) '12년	베트남 양허
1	기타 냉동연육	0	107,886	-	횡다랑어(냉동)	5	19,086	
2	기타 새우살(냉동)	20	81,881	TRQ	어류의 분, 조분, 펠리트	5	15,959	
3	주꾸미(냉동)	0	67,935	-	다랑어 어육(냉동)	5	8,168	
4	쥐치포(조제/밀폐용기 이외 기타)	0	41,810	-	가다랑어(냉동)	5	2,964	
5	오징어(건조)	10	34,867	양허 제외	기타 대구(냉동)	5	2,897	
6	새우류(조제 또는 저장처리)	20	31,290	TRQ	기타 다랑어(냉동)	5	2,416	
7	기타 새우류(냉동)	20	28,702	TRQ	기타 어류(냉동)	5	1,080	
8	기타 연체동물 (분 : 조분 및 펠리트 포함, 냉동)	20	18,432	10년 철폐	김(식용)	5	833	
9	새우류(밀폐 용기 이외 기타)	0	18,167	-	오징어(냉동)	5	546	
10	낙지(냉동)	0	16,270	-	수산부산물(어류의 간유와 그 분획물)	0	379	-
11	어류의 유지와 분획물(간유 제외)	0	6,666	-	수산부산물(어류의 유지와 그 분획물, 간유 제외)	0	261	-
12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서스/냉동)	10	5,933	양허 제외	고등어(냉동)	5	207	2016년 철폐
13	메기(릴레, 냉동)	0	4,337	-	기타 넙치류(냉동)	0	136	-
14	오징어(냉동)	22	3,797	양허 제외	넙치(냉동)	0	112	-
15	기타 어류(대구, 멸치, 명태, 조기 등 외 기타 건조/훈제 제외)	0	2,977	-	기타 태평양연어(냉동)	0	103	-
16	새우류(조제 또는 저장처리)(기타)	0	2,887	-	기타 연어류(냉동)	0	98	-
17	문어(밀폐 용기 이외 기타)	20	2,323	5년 철폐	눈다랑어(냉동)	0	94	-
18	가오리(냉동)	10	2,111	5년 철폐	갑각류 ·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분, 조분, 펠리트	5	87	2018년 철폐
19	기타 게(냉동)	14	1,920	10년 철폐	기타 어류(활어)	0	57	-
20	어류의 분, 조분, 펠리트	0	1,782	-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0	56	-
	(20대 수입소계)		481,975		(20대 수출소계)		55,539	
	수산물 수입합계		505,364		수산물 수출합계		56,011	

* 대상 : 한-아세안 FTA 일반품목을 포함한 전 품목

* 품목수 : (한국) HS 2012, (베트남) HS 2012 기준, 수입액 : 양측 모두 2012년 기준

* 한/베트남 양허 : “-”로 표기된 경우, 한-아세안 FTA에 따라 일반품목으로 분류되어 우리의 경우 2010년에, 베트남의 경우 2015년에 관세철폐 완료

* 관세율 : 기준세율을 의미

2018년
철폐

〈 한–베트남 FTA 수산물 우리 양허 유형별 주요 품목 〉

구 분	주 요 품 목	품목수
한–아세안 FTA	낙지(냉동), 문어(냉동), 마꾸라지(활어), 전갱이(신냉), 대구(건조), 명태(복어), 고등어(신냉/염장), 명란(냉동), 임연수어(냉동), 달고기(냉동), 흉살치(냉동), 은대구(냉동), 해덕(필렛), 민대구(필렛), 냉동연육, 어류조분, 취지포, 까나리(건조), 꽁치(건조), 참다랑어(필렛), 청어(신냉), 농어(냉동) 등	439
한–베트남 FTA 추가 시장 개방		84
즉시 철폐	실장어(활어), 돛(치어), 농어(치어), 피조개 종패(활,신냉)	4
3년 철폐	넙치류 기타(신냉), 황다랭이(신냉), 다랑어류 기타(신냉), 방어(신냉), 님치(냉동), 가지미(냉동), 정어리(냉동), 피조개(신냉), 전복(염장), 달팽이(기타), 어류기타조분, 것장어(활어), 가지미(신냉), 터번(신냉), 날개다랑어(신냉), 건조어판, 틸라피아(염장), 상어지느러미(염장), 해파리(냉동), 새조개(기타), 해파리(기타) 등	26
5년 철폐	자라(산것), 방어(활어), 붕장어(활어), 먹장어(활어/냉동), 가오리(냉동), 복어(냉동), 불낙(냉동), 멸치젓(염장염수장), 조기(염장), 바지락(냉동), 피조개(냉동), 연체동물기타(냉동), 성게(냉동), 생선목(개맛), 굴기타, 벌장어 통조림, 조제분어, 바지락 기타, 전복기타, 조제소라, 조제연체동물, 가리비과조개(기타), 김오징어(활, 신냉), 정어리 통조림 등	35
10년 철폐	틸라피아(냉동), 연어(냉동), 돛기타(냉동), 기타여류(냉동), 다시마염장(식용), 기타해조류(식용외), 전갱이(냉동), 기타계기타(냉동), 새우젓, 다랑어 통조림(기타/2), 기타여류의 머리꼬리위(건조/염장/훈제) 등	12
TRQ	새우(냉동/가공)	7
한–아세안 FTA 양허유지 (*아래는 한–베트남 FTA 양허 카테고리에 따라 분류)		106
'16.1.1일부 관세 0~5%로 인하	대구(신냉), 넙치류(냉동), 황다랑어(냉동), 가다랑어(냉동), 눈다랑어(냉동), 태평양 참다랑어(냉동), 기타다랑어(냉동), 청어(냉동), 대구(냉동), 꼼상어와 기타상어(냉동), 옥돔(냉동), 게(신냉), 가리비과조개(신냉), 바지락(신냉), 조제 김 등	16
'16.1.1일부 관세 2005년 MFN세율의 20% 감축	기타(활어), 벌장어(활어), 넙치(냉장/파레트), 눈다랑어(신냉), 눈다랑어(신냉), 고등어(냉동), 멸치(건조), 기타꽃게(냉동), 게(신냉), 대개(냉동), 새우류(건조), 오징어(신냉, 냉동, 염장/염수장, 건조, 훈제), 전복(신냉), 김(건조), 미역(건조, 염장, 기타), 뽕(건조/기타), 다시마(기타), 기타 해조류, 조미오징어 등	31
기준세율유지*	대서양/태평양/남방 참다랑어(활어), 기타돌(활어), 능성어(활어), 복어(활어), 틸라피아(활어), 불락(활어), 기타농어(활어), 송어(활어), 멸치(신냉), 날찌개(신냉), 황새치(신냉), 민대구(신냉), 틸라피아(신냉), 미기(신냉/냉동), 갈치(신냉/냉동), 삼치(신냉), 흉어(냉동), 명태(냉동), 조기(냉동), 이귀(냉동), 민어(냉동), 다행이류(조제/밀폐용기), 냉수성 새우류(염장, 염수장) 등	59
합계		629

* 한–베트남 FTA상 기준세율을 유지 의무(양허 카테고리 “E”)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 한–아세안 FTA상 양허제외(양허 카테고리 “E”) 뿐 아니라 한–아세안 FTA상 관세 감축 의무를 이미 달성한 초민감품목(양허 카테고리 “A”)도 포함

3.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개요

■ **(원산지 규정)**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충족의 기준으로 협정문에서는 원산지 일반 기준을, 부속서에서는 개별품목에 대한 품목별원산지기준(PSR: Product Specific Rules)을 규정

- 원산지 일반기준으로 (i) 완전생산 기준, (ii) 실질적 변형기준으로서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 기준 등을 규정
 - 그 외 비원산지 재료가 무시할 만한 수준인 경우 원산지로 인정하는 최소허용수준(미소기준) 및 역내 교역을 촉진하기 위한 누적기준 등 포함
- 품목별원산지기준(PSR)에서는 2012년 기준 HS 6단위 5,205개 품목에 대하여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실질적 변형으로 볼 수 있는 특정 요건을 만족시킬 경우 원산지로 인정

■ **(역외가공지역)** 역외가공지역(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100개 품목 (HS 6단위)에 대해 한-베트남 FTA상 특혜관세 수혜 기회 마련

■ **(원산지 절차)** 원산지 증명 방식, 특혜관세 신청 절차, 원산지 검증 방식 등에 대하여 규정

- **(증명 방식)** 기관증명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협정 발효 3년 후 자율증명 도입 등 증명 방식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도록 규정
- **(특혜 신청 절차)** 수입신고시에 수입관세당국이 요구하는 경우 원산지 증명서 및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

- (검증 방식) 수입국 관세당국이 수출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는 간접검증 방식을 도입하고, 필요시 수출국 방문검증이 가능하도록 규정

상세내용

1 원산지 기준 (제3.1조)

▣ 특혜관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원산지 기준으로 다음의 세 가지 원칙을 규정

- 수출 당사국에서 완전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 수출 당사국에서 완전획득되거나 생산되지 않았으나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상품
- 수출 당사국에서 원산지 재료로만 사용하여 생산된 상품

2 완전생산 상품 (제3.2조)

▣ 다음의 경우 당사국에서 완전 생산되거나 획득된 상품으로 인정

-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식물과 식물상품
-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및 이로부터 획득한 상품
- 어느 한쪽 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수렵 또는 뒷사냥을 통해 획득한 상품, 또는 어느 한쪽 당사국의 내수 또는 영해 내에서 양식 또는 어로로 획득한 상품
- 어느 한쪽 당사국의 토양,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에서 추출하거나 취득한 광물 및 다른 자연 발생 물질

- 당사국 영해 밖의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로부터 어느 한쪽 당사국에 등록되고 그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에 의하여 취득된 어로 생산품과 그 밖의 어로 상품 (다만, 당사국이 그러한 수역, 해저, 그리고 해저 하부의 자연자원에 대해 탐사할 권리를 국제법상 가져야 함)
- 우주공간으로부터 취득된 상품 (다만,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인(人)에 의해 획득되어야 함)
-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집된 물품으로서 더 이상 본래 목적을 수행할 수 없고 저장 또는 수리할 수 없으며 원재료의 부품의 처분이나 회수, 또는 재활용 목적으로만 적당한 물품
- 당사국 영역의 생산품 또는 당사국 영역에서 수집된 중고 상품으로부터 나온 폐기물의 부스러기

3) 불완전생산 상품 (제3.3조)

■ 완전생산 상품이 아닌 경우, 부속서 3-가에 규정된 조건을 만족할 경우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원산지로 인정

- (세번변경 기준)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상품을 생산함에 있어 일정한 세번 변경을 거친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 ※ 세번변경기준은 HS 2단위 변경기준(CC)이 가장 엄격하며, 4단위 변경기준(CTH) 및 6단위 변경기준(CTSH)은 완화된 기준
예) 원유(HS2709)를 수입하여 석유(HS2710)를 생산할 경우 4단위 세번 변경
- (부가가치 기준) 생산과정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역내부가가치를 충족할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4) 역내부가가치(RVC) 계산방법 (제3.3조 제2항)

- 역내부가가치(RVC: Regional Value Content)의 계산방식은
집적법(Build-up)과 공제법(Build-down)이 있음

- 집적법(Build-up): 원산지 재료가치를 누적하여 계산

$$\text{역내부가가치(RVC)} = \frac{\text{원산지재료가치(VOM)}}{\text{본선인도가격(FOB)}} \times 100\%$$

- 공제법(Build-down): 비원산지 재료가치를 제외하여 계산

$$\text{역내부가가치(RVC)} = \frac{\text{본선인도가격(FOB)} - \text{비원산지재료가치(VNM)}}{\text{본선인도가격(FOB)}} \times 100\%$$

5) 중간재(Roll-up) (제3.3조 제4항)

- 하나의 원산지 상품이 다른 상품의 재료로 사용될 경우, 이후에 생산된
상품의 원산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원산지 상품 내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를 고려하지 않음(Roll-up)

6) 특정상품의 취급 (제3.5조 및 부속서 3-나)

- 부속서 3-나 요건*을 충족시 개성공단 제품에 대해 한·베트남 FTA상
특혜관세 수혜 기회 마련

* 비원산지 투입가치가 최종 상품 가격(FOB)의 40% 이하일 것 등

- 개성공단 품목은 개성공단 기업의 희망 품목과 최근 생산품목 등을
고려하여 100개 품목(HS 6단위)을 선정

- 의류, 기계, 전기전자, 플라스틱 제품, 자동차 부품 등 다양한 품목군으로 구성

7) 누적기준 (제3.6조)

- ▣ FTA로 인한 시장 통합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한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 다른 당사국에서 특혜관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최종 상품의 재료로 사용될 경우 그 최종 상품의 작업이 발생한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함

※ 양국은 협정발효일로부터 3년 후 이 조항을 재검토할 수 있음

8) 불인정 공정 (제3.7조)

- ▣ 원산지 챕터의 다른 어떠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만 또는 결합되어 수행되었다고 해서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않는 불충분공정을 규정

- 상품의 운송 및 보관을 위한 보존 공정, 포장의 변경 및 해체, 직물의 다림질, 단순 혼합, 도축 등을 규정

9) 직접 운송 (제3.8조)

- ▣ 특혜관세 대우는 원산지 챕터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되는 상품에만 적용

- 다만 비당사국을 경유하더라도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직접운송으로 간주

- 경유가 지리적 이유로 또는 오직 운송요건에만 관련한 고려에 의하여 정당화될 경우
- 상품이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하는 경우
- 상품이 하역,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

10) 최소허용수준(미소기준) (제3.9조)

■ 비원산지 재료가 해당 품목의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치가 FOB 10% 이하로 사용된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 최소허용수준(미소기준)은 원산지기준 판정의 효율성을 위해 우리 기체결 FTA 대부분에 반영됨

■ 제50류~제63류(섬유 및 의류) 대해서는 세번변경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치가 FOB 10% 이하인 경우 또는 세번변경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총 중량이 상품 중량의 10% 이하인 경우에도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되도록 하여 가격기준과 중량기준을 선택가능

11) 중립재 (제3.12조)

■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었으나, 최종 제품에 결합되지 아니하는 연료, 공구, 예비부품, 윤활제, 안전장비 등의 중립재는 원산지를 판정할 필요가 없음

12) 동일하고 대체가능한 상품 또는 재료 (제3.13조)

▣ 동일하고 대체가능한 상품 또는 재료의 원산지 판정 방법을 규정

- 원산지 판정의 간소화 및 무역편의 증진을 위해 동일하고 대체가능한 재료 및 물품*을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는 재고관리법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

* 종류 및 상업적 가치가 같은 재료 또는 상품으로서 동일한 기술적 및 물리적 특성을 지니며, 일단 최종재에 결합되면 본래의 목적상 어떤 표지에도 서로 구별되지 아니하는 상품 또는 재료(제3.26조 정의)

13) 품목별원산지기준(PSR) (제3.4조 및 부속서 3-가)

▣ 한–아세안 FTA 기준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되, 양국의 생산 과정과 교역 패턴을 고려하여 보다 무역촉진적인 방향으로 품목별원산지 기준을 개선

※ HS 6단위 기준 총 5,205개 중 한–아세안 대비 약 460여개(약9%) 개선

- (석유화학) 대부분 한–아세안 FTA와 유사한 “4단위 세번변경(CTH) 또는 부가가치 40%(RVC40)”를 채택하되, 휘발유 제품에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 채택

※ 한–아세안 FTA의 일반기준: 4단위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 40%

- (철강) 원재료 조달, 양국 산업구조 등을 고려, 대부분 “4단위 세번변경(CTH) 또는 부가가치 40%(RVC40)” 기준이나, 스테인레스강 중 일부 품목(광폭냉연강판 등)은 “6단위 세번변경(CTSH) 또는 부가가치 40%(RVC40)” 기준으로 합의하여 교역을 촉진

- (자동차) 완성차는 한–아세안 FTA 기준과 같이 “부가가치 45%

(RVC45)" 기준으로 하되, 자동차 부품 중 일부 품목(기어 박스, 차축 등)에 세번변경 기준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도록 추가함

- (기계, 전기·전자) 한–아세안 FTA에서 대부분 “4단위 세번변경(CTH) 또는 부가가치 40%(RVC40)”이나, 양측 교역촉진을 위해 일부 품목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을 “6단위 세번변경(CTSH) 또는 부가가치 40%(RVC40)”으로 개선
- (섬유·의류) 대부분 한–아세안 FTA와 유사하게 세번변경 기준과 부가가치 기준 중에 선택할 수 있으나, 기타 섬유제품(손수건, 스카프 등)에 대한 역외산 재료 사용을 허용하여 교역을 촉진
- (농축수산물) 신선농수산물을 대체로 한–아세안 FTA 기준(완전생산기준(WO))을 유지하되, 가공농수산물 중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선택기준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중 선택)의 비율을 높임

14 원산지 증명 방식 (제3.14조, 제3.16조)

■ 원산지 증명은 수출자, 생산자 또는 그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발급기관이 발급하는 기관증명 방식을 채택

-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 후 1년으로 규정
- 원산지 증명서 양식은 협정문 부속서 3-다에 규정

15 특혜관세 신청 절차 (제3.16조)

■ 원산지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당시 특혜관세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혜관세 사후신청 가능

- 수입일 후 1년 이내에 사후 환급 신청 가능

16 원산지 증명서 제출 면제 (제3.17조)

- 미화 600불 이하 또는 수입국이 정한 그보다 높은 금액 이하에 대하여 원산지 증명서 제출을 면제

17 기록 보관 의무 (제3.18조)

- 수입자는 수입국 법과 규정에 따라 수입 관련 기록을 보관하고,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수출자 및 생산자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5년 이상 수출국 법과 규정에 따라 관련 기록을 보관하도록 함

18 원산지 검증 (제3.21조)

- 수입국이 수출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는 간접검증 방식을 도입하고, 필요시 수출국 방문검증이 가능하도록 규정
- 수입국은 방문검증 이전에 수출국 발급기관 및 관세당국 등에 서면 통지하고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함
 - 방문검증은 연기 가능하며, 연기 요청 통지 수령일로부터 60일 또는 당사국 간 합의한 그 이상의 기간 이내에 방문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방문검증 통지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 방문 검증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특혜관세 배제 가능



4. 통관 및 무역원활화

개요

■ 통관 및 무역원활화 분야는 상품의 반출, 협력, 재심 및 불복청구, 사전심사, 관세위원회 관련 내용을 규정

- (재심 및 불복청구) 수입자에게 행정적 재심 및 사법적 재심 절차를 보장하고,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수입국에 직접 정보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
- (사전심사) 수입자, 상대국 수출자 및 생산자가 품목분류, 관세평가, 원산지 관련 사전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 (관세위원회) 원산지 기준 및 절차, 통관 및 무역원활화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규정

상세내용

1 상품의 반출 (제4.2조)

■ 상품의 효율적 반출을 위한 간소화된 통관 절차(부두직통관제 등)를 규정

- 수입물품 도착 전 전자적으로 통관 정보를 제출하고 처리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

2 협력 (제4.5조)

- ▣ 적법한 상품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노력과, 통관 기술/절차 향상 방법에 대한 지식 교류를 규정

3 재심 및 불복청구 (제4.8조)

- ▣ 관세 관련 결정에 대하여 당사국 영역 내 수입자에게 당해 결정을 내린 공무원 또는 기관과 독립된 행정적 재심과 사법적 재심을 보장하도록 규정
- ▣ 재심을 수행하는 당사국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정보를 직접 제공하고, 비밀 유지 규정에 따라 그 정보가 기밀로 취급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4 사전심사 (제4.10조)

- ▣ 당사국 수입자, 상대국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품목분류, 관세평가, 원산지, 기타 당사국이 합의한 사안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5 관세위원회 (제4.12조)

- ▣ 원산지 규정 및 절차, 통관 및 무역원활화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관세위원회를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규정

- 원산지 규정 및 절차, 통관 및 무역원활화 챕터의 이행과 이를 위한 통일규칙 제정, HS 변경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 기준 개정 등 역할 수행
 - 특히 원산지 규정 및 절차, 통관 및 무역원활화 챕터 개정 검토 및 개정에 대한 합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



5.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개요

- WTO SPS 협정을 근간으로 인간, 동·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면서 양국의 SPS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양국 간의 기술협력과 협의를 강화하도록 규정
 - 상호 이해 증진, 역량 강화 및 신뢰 구축 등을 위한 협력 모색
 - 동 챕터의 이행을 점검하고 정보교환 등의 협력을 증진하며, SPS 사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SPS 위원회를 설치
 - 양측 간 SPS 관련 분쟁은 FTA상 분쟁해결절차를 적용하지 않음

상세내용

1 적용범위와 정의 (제5.2조)

- 양국 간 무역에 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SPS 조치의 채택 및 이행에 적용
- 동 챕터의 목적상 WTO SPS 협정 부속서 (가)에 포함된 정의를 적용

2) 일반 규정 (제5.3조)

- WTO SPS 협정상의 서로에 대한 자국의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
- 양국 간 무역에 SPS 조치를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위장된 제한으로 적용할 수 없음

3) 기술 협력 (제5.4조)

- 양국의 규제체계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과 권한 당국 간 신뢰구축, 양국 간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SPS 분야에서의 기술협력 기회를 모색

■ 기술협력 활동

- 국제 기준과 국내 SPS 조치의 개발·적용에 대한 협력 및 경험 교환
- 위험분석, 동·식물 질병·병해충 관리, 실험실 시험 기술 등 협력 강화
- 동물 질병 및 식물 병해충 관리와 관련한 양 당사국의 신뢰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담당공무원 교환 프로그램 개발
- 중대한 동물 질병이나 식품안전 사고의 발생 및 후속조치 등과 관련된 정보 교환
- 양국의 WTO SPS 문의처간 경험 교환 및 협력 강화
- 동물 질병, 식물 병해충 및 식품안전 등에서의 공동 연구 및 그 결과 공유

4 SPS 위원회 (제5.5조)

▣ 동 챕터의 효과적인 운영과 이행을 위해 SPS 위원회를 설치

- 협정 발효 후 90일 이내에 위원회의 위임 사항을 규정하는 서한 교환을 통해 위원회 설치
- SPS 사안을 담당하는 양국 권한 당국의 대표들로 구성
- 발효 후 1년 이내 회합하고 그 이후 연1회 또는 합의하는 날에 개최
- 위원회 회의 조율 및 정보교환 등을 위해 접촉선 지정

▣ 위원회의 기능

- 동 챕터의 이행을 점검
- 양국 간의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SPS 조치에 대한 정보 교환
- 양국 간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SPS 조치의 개발 및 적용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협의하고, 필요시 기술작업반 설치를 고려
- SPS 조치 및 그와 관련된 규제절차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
- 양국 간의 기술협력 확인, 논의 및 검토
- 양국이 합의한 기타 기능 수행

5 분쟁해결 (제5.6조)

▣ 동 챕터에서 발생하는 모든 SPS 관련 분쟁은 동 협정상의 분쟁해결 절차를 적용하지 않음



6.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개요

- ▣ 건자재, 화장품, 의료기기 등 분야에서의 무역기술장벽 완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시험인증기관의 베트남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또한, 기술규정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 기간(60일)을 명확히하고, TBT 위원회 설치를 통해 정례적인 TBT 현안 논의가 가능해짐

상세내용

1 적용범위 (제6.3조)

- ▣ 양 당사국간의 상품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앙정부 및 지방 정부의 모든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평가절차를 적용 범위에 포함

2 국제표준을 기술규정의 기반으로 사용 (제6.4조)

- ▣ WTO TBT 협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자국의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절차는 국제표준, 지침, 권고 등에 기반하여 사용
 - 국제표준 등의 존재 여부 판단은 WTO TBT 위원회가 채택한 국제표준 개발원칙에 근거

3) 기술규정의 동등성 인정 (제6.5조)

- 상대국 기술규정이 자국 규정과 동일하지는 않으나 자국 규정의 목적을 충족하는 경우, 상대국의 기술규정을 자국의 기술규정과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고려

4) 적합성평가절차 원활화 (제6.6조)

- 적합성평가의 효율을 높이고, 중복 시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국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평가 결과의 수용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접근법* 선택 가능

* ① 상대국 소재 기관이 수행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수용, ② 상대국 영역에 소재하는 적합성 평가기관의 지정, ③ 양국 적합성 평가기관간의 자발적 약정 등

- 상대국의 요구가 있는 경우, 상대국 진출 적합성 평가기관을 자국 적합성 평가기관으로 인정, 승인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고려
-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의 통신장비 적합성평가를 위한 상호인정 협정(APEC TEL MRA)과 관련하여 정보교환을 촉진

5) 투명성 (제6.7조)

- 당사국 및 공중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자국이 제안한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통지 다음 날부터 최소 60일의 기간을 허용
- 채택된 모든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가 공식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

6 공동협력 (제6.8조)

■ 관련 제도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과 상대국 시장 접근의 촉진을 위하여 표준, 기술규정 등 분야에 대한 상호 협력을 강화

- 특히, 특정 분야의 표준 및 기술규정 등에 관한 무역촉진 이니셔티브*를 개발하고 증진하는데 노력

* 무역촉진 이니셔티브의 예: 정보교환, 적합성평가기관 인정 등 규제현안에 대한 협력, 적합성평가결과 상호수용을 촉진을 위한 메커니즘의 사용 등

■ 상대국이 제안한 특정협력 분야(건축자재,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우호적인 검토

7 TBT위원회 (제6.10조)

■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과 운영을 위해 양국 대표로 구성되는 TBT 위원회를 설치하고, 상대국 요청에 의해 회합

- TBT위원회의 주요 기능: TBT챕터 이행 점검, TBT현안 처리, 표준 · 기술규정 · 적합성평가절차 관련 협력 촉진, 특정 사안 논의를 위한 임시작업반 설치, 기술협의 등



7. 무역구제

개요

- FTA에 따른 관세 인하 또는 철폐로 인해 수입국의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 양자 세이프가드를 도입
- 무역구제조치 발동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WTO 협정문보다 엄격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합의함으로써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치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상세내용

1 세이프가드 (제1절)

【양자 세이프가드】

- 상대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FTA 특혜관세 적용의 결과로, 동종 및 직접경쟁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정지 또는 최혜국(MFN) 관세율 수준까지 관세인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 도입
 - 발동기간은 2년 이하, 필요시 1년 연장 가능 (3년이 최대한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과도기간* 내 발동
- * 과도기간: 협정 발효 후 10년, 관세철폐기간이 10년 이상인 품목은 관세철폐 기간

▣ 지연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초래될 중대한 상황에서, 조기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잠정조치’를 허용

- 잠정조치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예비판정 이전에 최소 20일간 의견개진 기회를 부여하고 조사개시로부터 45일 이후 조치를 발동하도록 규정
- 잠정조치 적용 전 상대국에 통보 및 조치 적용 후 협의 개시, 잠정조치 존속기간은 최대 200일로서 전체 조치 기간에 포함

▣ 세이프가드조치 적용 후 30일 이내에, 조치 적용 당사국은 상대국에게 ‘보상’ 관련 협의 기회 제공

- 협의 후 30일 내 보상에 관한 합의 도출 실패시, 조치 적용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해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지는 양허적용 정지가 가능
 - 단, 이 협정의 규정에 합치하고 절대적 수입 증가로 인한 긴급수입제한 조치인 경우, 조치 후 최초 24개월간 양허적용 정지 금지
- ※ WTO 세이프가드 협정은 절대적 수입증가 및 협정의 규정에 합치하는 경우, 최초 3년간 보복금지 규정(WTO 세이프가드협정 제8.3조)

▣ 산업피해의 실질적인 원인(substantial cause)일 경우에만 발동할 수 있도록 발동요건 강화, 동일 상품에 대한 재발동 금지, 점진적 자유화, 보상보복 규정을 도입하여 FTA 무역자유화 취지에 역행하는 양자 세이프가드 남용을 방지

【다자 세이프가드】

▣ WTO 협정에 따른 다자 세이프가드 발동 권한을 보유하되, 동일한 상품에 대해 양자 세이프가드와 다자 세이프가드의 동시 발동은 금지

- ▣ 다자 세이프가드 발동시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자국 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 또는 그러한 우려를 야기하는 실질적 원인(substantial cause)이 아닌 경우, 상대국 수출품을 발동 대상에서 재량적으로 면제 가능

2) 반덤핑 및 상계조치 (제2절)

- ▣ 덤팅마진 산정시 ‘제로잉 금지’ 관행 준수

* 제로잉(Zeroing) 금지: 반덤핑마진 계산시 양 또는 음의 값에 상관없이 모든 개별마진을 평균 계산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음의 마진을 임의로 누락하여 총 덤팅마진이 높게 계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원칙

- ▣ 덤팅 마진이 국내산업 피해를 제거할 수 있는 수준보다 높을 경우, 국내산업 피해를 제거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최소부과원칙('lesser-duty' rule)규정 도입

* WTO 반덤핑협정상 ‘최소부과원칙(Lesser Duty Rule)’은 바람직한 것으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 사항(WTO 반덤핑협정 제9.1조)

- ▣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신청을 접수한 경우, 조사개시 이전에 상대국에 서면통보를 제공하고 관련 협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규정

- 반덤핑의 경우 조사개시 15일 전, 신청 접수 사실을 통지하고 협의 기회를 제공

* WTO 반덤핑 협정은 조사개시 전 통보의무만 규정(WTO 반덤핑협정 제5.5조)

- ▣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조사 과정에서 약속(Undertakings) 제안이 있을 경우 수입국의 조사당국은 이를 적절히 고려하고, 충분한 협의 기회를 당사국 수출자에게 부여하도록 규정

※ 약속(Undertakings) : 수출자의 자발적인 기격인상에 관한 약속 제의가 조사당국에 의해 수락될 경우, 관세부과 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할 수 있는 제도

- 이 제도는 수출자에게 유리한 문제 해결 방식이며, 반덤핑관세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 받지 않고 조사를 중지할 수 있는 대안적 제도

- ▣ 재심의 결과로 이전 12개월 내에 반덤핑 조치가 종료된 상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신청을 ‘특별한 주의’를 갖고 검토
 - ▣ 2개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이 동시에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관련 조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효과에 대한 누적적 평가가 적절한지를 ‘특별한 주의’를 갖고 검토
- ※ WTO 반덤핑 협정상 합산여부는 조사당국의 재량(WTO 반덤핑 협정 제3.3조)

3) 무역구제위원회 (제3절)

- ▣ 양국은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 조치와 긴급수입제한조치 문제를 포함한 무역구제 사안을 다루기 위해 무역구제위원회를 설치
 - 최소 매년 1회, 양국 합의시 더 자주 회합 가능
- ▣ 무역구제위원회의 기능은 ▲ 양국간 무역구제 법, 정책 및 관행에 대한 이해 증진, ▲ 무역구제 사안을 담당하는 양 당사국 당국간 협력을 증진 하는 것 등을 포함

8. 서비스 무역

개요

■ 한-베트남 FTA 서비스 분야는 제8장 본문, 제8장 부속서(총 4개)*로 구성

* 금융서비스(부속서 8-가), 통신서비스(부속서 8-나), 자연인의 이동(부속서 8-다),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부속서 8-라)

■ 기존의 한-아세안 FTA 서비스협정을 토대로 일부 한-미 FTA 수준*의 문안을 포함함으로써 서비스 관련 규범을 개선

* 투명성(제8.7조), 혜택의 부인(제8.14조) 조항에서 규범의 수준 제고

■ Negative 자유화 방식에 기반한 재협상 약속 (제8.19조)

● Positive 자유화 방식에 따라 협정문 및 양허를 작성하였으며, 한·베트남 FTA 발효 이후 베트남이 Negative 자유화 방식의 서비스 협정을 비준할 경우, 우리측 요청에 따라 Negative 자유화 방식에 기반한 재협상을 개시할 것을 규정하여 향후 추가 자유화 근거 확보

※ 베트남이 서비스 분야에서 Negative 자유화 방식에 따른 후속협상을 약속한 것은 한-베트남 FTA가 최초

- 후속협상은 협상 개시 후 1년내 협상 종료를 목표로 투자챕터와 연계하여 통합 유보리스트를 작성

■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

● 양측 모두 한-아세안 FTA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 시장 개방 추진

- 특히, 우리는 건설 관련 분야에서 베트남으로부터 한-아세안 FTA 보다 높은 수준의 양허 확보
- 향후 네거티브 방식의 재협상을 통해 자유화 수준 제고 가능성 기대

상세내용

1 적용범위 (제8.1조)

■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국의 모든 조치

- 다만, 연안 해상운송 서비스, 항공 운송 서비스*, 정부 조달, 정부 보조금, 정부권한 관련 제공 서비스는 제외
- * 항공 운송 서비스 중 항공기 유지 및 보수, 항공 운송 관련 판매 및 마케팅, 컴퓨터 예약 시스템 서비스는 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

2 일반적 의무

■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제8.2조)

-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상대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

■ 최혜국 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제8.3조)

- 협정 발효 후, 제3국에 보다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경우, 이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상대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기 위한 협의를 요청할 권한 부여

■ 시장접근(Market Access)(제8.4조)

- 양허표(부속서 8-라)에 시장접근 약속을 한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 한, 서비스 공급자의 수 또는 사업의 범위를 한정하는 양적 제한, 사업자의 법적 형태를 제한하는 규제의 도입을 금지

금지되는 시장접근 제한 조치

- ① 서비스 공급자의 수 제한
- ② 서비스 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 제한
- ③ 서비스 영업의 총 수 또는 서비스 총 산출량의 제한
- ④ 고용인의 총 수 제한
- ⑤ 사업자의 법적 형태(법인, 합작투자 등)의 제한
- ⑥ 외국인 자본 참여의 제한

3 투명성 (제8.7조)

- ▣ 서비스와 관련한 자국의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질의에 응답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설립·유지
- ▣ 서비스와 관련하여 채택을 제안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에 대한 사전공고와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서면 요청에 의하여 부여하지 않은 사유를 제공
- ▣ 국내법에 따라 서비스와 관련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최종 규정의 공표와 발효일간에 합리적 기간을 부여할 의무

4 국내규제 (제8.8조)

- ▣ 양허표에 기재된 서비스 공급 관련 적법한 신청에 대해, 권한 있는 당국은 신청인에게 합리적 기간 내에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을 통보

- 자격요건 및 절차, 기술 표준, 면허요건과 관련된 조치가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근거하고, 서비스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이 되지 않도록 보장할 의무

5) 인정 (제8.9조)

- 상대국 내에서 습득한 교육이나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받은 면허나 증명을 인정하기 위하여 당사국 또는 관련 기관간 협정이나 약정을 체결하거나 자발적으로 인정 가능
- 공동위원회를 통해 그러한 협정이나 약정에 관한 협상을 사전통보하고, 새로운 인정 조치의 채택 또는 현행 인정 조치에 대한 수정 시 이를 신속하게 통보

6) 지불 및 송금 (제8.12조)

- 경상거래에 대한 송금과 지불이 국내외로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하용

- 다만 일정한 요건*하에 ① 국제수지와 대외 금융상의 심각한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경우, ② 예외적으로 지불 및 자본 이동이 통화정책 또는 환율정책 운용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송금이나 지불 제한 가능

* ① 차별적이지 않으며, ② 국제통화기금협정과 일치하며, ③ 상대국의 상업적·경제적·금융상의 이익을 불필요하게 침해하지 않으며, ④ 필요한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⑤ 일시적이어야 할 것

7) 혜택의 부인 (제8.14조)

- ① 제3국 또는 혜택부인 당사국의 인이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② 상대국 내에서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상대국의 법인인
 서비스 공급자(이른바 paper company)에게는 동 협정상 혜택을
 부인하는 것이 가능함을 규정

8) 네거티브 목록 방식에 기반한 재협상 (제8.19조)

- 협정 발효 후 한 쪽 당사국이 제3국과 네거티브 목록 방식을 채택하여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을 비준할 경우, 현재의 포지티브 목록 방식의
 서비스 무역 및 투자에 관련된 장 및 부속서들을 네거티브 목록 방식에
 기반하여 재협상하도록 요청하는 권한 부여
 - 재협상 요청 이후, 양 당사국은 1년 이내에 협상을 종료
 - 재협상시 이 협정상 혜택의 전반적인 균형을 고려하고, 현행 자유화 약속
 수준을 감소시키지 않을 것을 명시

금융서비스 부속서 (부속서 8-가)

- 우리 금융기관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제도를 체계적으로 마련
- 금융서비스 부속서는 금융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적용

1) 건전성 조치, 환율 및 금융안정성 (2항)

- 금융제도의 무결성 · 안정성 및 환율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금융 서비스와 관련하여 건전성을 사유(투자자, 예금자, 보험계약자 등 보호)로 조치를 채택할 당사국의 권한을 확인
 - 단, 당사국의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건전성 조치를 남용하지 않도록 약속

2) 투명성 (3항)

- 양국은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활동을 규율하는 투명한 규정과 정책이 상대국 시장에 대한 접근과 상대국 시장에서의 영업 촉진에 중요함을 인정하고 금융서비스 규제의 투명성 증진에 합의
 -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금융 부속서의 대상에 관해 채택하고자 제안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의 사전 공표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시 기회 제공
 - 국내 법 ·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최종 규정의 공표와 발효 일간에 합리적 기간을 허용
- 금융 부속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에 관해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질의에 응답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설치하거나 유지
- 요구되는 모든 서류를 포함하여 금융서비스 공급에 관련된 신청을 완료하기 위한 요건을 공개
- 신청의 처리상황을 신청자에게 알리고 당국이 신청자에게 추가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규정된 시한 내에 신청자에게 통보
- 금융서비스 공급에 관해 신청이 완료되면 180일 이내에 행정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신청자에게 신속하게 통보하며, 180일 이내 행정

결정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자체 없이 신청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합리적 기간 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노력

- ▣ 신청이 거부된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거부한 규제당국은 가능한 한도 내에서 신청거부사유를 신청자에게 알릴 것

3) 신금융서비스 (5항)

※ 신금융서비스: 상대국에서는 허용·거래되고 있으나, 아직 자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금융서비스나 금융상품

- ▣ 신규 금융서비스 도입이 새로운 법령이나 기존 법령의 수정을 필요로 하지 않은 경우 국내 금융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현행 금융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 금융기관이 공급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신금융서비스를 허용

4) 금융서비스 위원회 (10항)

- ▣ 양국은 금융 부속서의 이행 및 금융서비스 분야에서의 협력을 포함한 금융서비스에 관한 이슈를 검토하기 위해 양국 금융서비스 담당 공무원들로 구성되는 금융서비스위원회 설립에 합의

5) 협의 (11항)

- ▣ 금융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이 협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상대국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상대국은 이를 호의적으로 고려

통신서비스 부속서 (부속서 8-나)

- ▣ 통신서비스는 그 자체가 서비스 교역활동이면서 동시에 다른 경제 활동의 토대가 되는 수단
- ▣ 상대국의 사업자가 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공중통신전송망 및 서비스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

① 협정 적용 범위 (1항)

- ▣ 공중통신전송망 및 서비스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국 조치에 적용(라디오 또는 TV 프로그램의 방송 및 케이블 배분 등은 적용 배제)

② 접근 및 이용 (2항)

- ▣ 각 당사국으로 하여금 상대국 사업자가 전용회선을 포함한 공중통신 전송망 또는 서비스에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명시
- ▣ 공중통신전송망 및 서비스 공급자의 공공서비스 책임성 확보 또는 공중통신전송망 및 서비스의 기술적 무결성(integrity)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상대국 사업자의 접근 및 이용에 대해 일정한 조건 부여 가능

※ 통신망 및 서비스와의 상호접속(interconnection)을 위해 특정한 기술적 인터페이스 사용요건, 통신서비스의 상호 운용성(inter-operability) 확보를 위한 요건 및 단말기 등 장비의 공중통신망 부착과 관련된 기술요건 등을 예시적으로 규정

3 경쟁보장장치 (3항)

■ 지배적 사업자가 반경쟁적인 행위(교차보조 등)에 관여하거나 이를 지속하는 것을 방지할 의무 부담

※ 지배적사업자: 필수설비에 대한 통제력 또는 시장 지위 등을 이용하여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신서비스 공급자

※ 교차보조(cross-subsidization): 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의 독점력을 통해 획득한 초과이윤을 경쟁적인 다른 통신시장에 종사하는 자회사·계열사 등에게 보조하는 행위

4 상호접속 (5항)

■ 각 당사국으로 하여금 자국 영역안의 지배적 사업자가 상대국의 공중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지점에서 비차별적이고 시의적절한 조건의 상호접속을 제공하도록 보장

5 그 밖의 조치

■ (번호 이동성) 자국 영역의 공중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가, 기술적 및 경제적으로 가능한 한도 내, 합리적 조건으로 이동전화 서비스에 대해 번호이동성 제공을 보장(9항)

■ (통신규제기관) 통신규제기관이 공중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와 분리되도록 보장하고, 동 규제기관의 결정 및 절차가 모든 이해 관계자에 대해 공정하도록 보장(10항)

- (보편적 서비스) 통신사업자의 보편적 서비스 의무를 투명·비차별·경쟁 중립적으로 운영하고 필요이상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보장(11항)
- (희소자원의 분배) 주파수, 번호 등 통신자원의 분배 및 이용에 관한 절차를 객관·투명·비차별적으로 시의적절히 시행(12항)
- (통신 분쟁해결) 협정문상 규정된 사안에 대한 통신 규제기관의 조치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구제 신청, 사법적 재심 요청 가능(13항)
- (투명성) 요율 및 기타 서비스 요건, 조치와 관련된 기존의 채택·개정에 책임있는 기관에 대한 정보 등 공중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의 접근 및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근거에 관한 정보를 공개(14항)

자연인의 이동 부속서 (부속서 8-다)

1 적용범위 (1항)

- 부속서 8-라의 범주*에 따라, 당사국 자연인의 상대국 영토로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적용

*부속서 8-라에서는 ① 기업내전근자(ICT), ② 그밖의 인력, ③ 서비스 판매인, ④ 상업적 주재 설립에 책임이 있는 인, ⑤ 계약서비스 공급자(CSS)의 5개 범주로 구분

- 자연인의 이동 부속서가 고용시장에 접근하고자 하는 자연인이나 국적, 영주 또는 영구적 고용에 관한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함

2) 신청 절차 (3항)

▣ 각 당사국은 출입국 절차를 위한 신청을 수령한 뒤, 가능한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신청인에게 통지

- 신청인의 요청시, 신청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불완전한 신청의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보를 신청인에게 통보
- 신청이 거부되었을 경우, 거부처분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3) 자연인의 이동을 위한 조건 및 제한 (4항)

▣ 각 당사국의 이민법과 규정에 합치되는 한도 내에서, 부속서 8-라에 규정된 바와 같은 구체적 약속의 조건 및 제한*에 따른 입국 및 일시체류를 보장할 것을 규정

* 부속서 8-라의 구체적 약속의 조건 및 제한은 양국 모두 한-아세안 FTA와 동일한 수준

4) 투명성 (5항)

▣ 협정 발효일에 다른 쪽 당사국 자연인의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과 관련한 신청 요건 및 절차에 대한 정보를 상대국에게 공표하거나 이용가능하게 하여야 함

▣ 자연인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에 대하여 상대국으로부터의 질의에 응답하기 위한 접촉선 또는 그 밖의 메커니즘 유지 또는 설립

▣ 자연인의 이동과 관련한 새로운 요건 및 절차의 도입 또는 기존의 요건 및 절차에 대한 변경을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

5) 분쟁해결 (6항)

- 당사국은 이 부속서에 따른 일시 입국 허용 거절에 관해, ① 그 사안이 반복된 관행(pattern of practice)과 관련이 있고, ② 해당당사국의 자연인이 가능한 모든 국내적 행정 구제 절차를 완료하였을 경우에만 이 협정의 분쟁해결 절차(제15장) 적용 가능

6) 자연인의 이동 위원회 (7항)

- 양 당사국은 출입국 공무원들로 구성되는 자연인의 이동 위원회를 설립하고,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1년에 한번 회합할 것을 규정
- 위원회는 자연인의 일시 입국에 관한 정보교환 절차를 수립하고, 동 부속서의 이행 및 운영을 고려
- 상호 합의하에 그 밖의 관심사항을 논의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

7) 협력 (8항)

- 양 당사국은 비자 처리, 국경안전 그리고 자연인의 관리와 관련된 절차를 개발하고 적용한 다양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협력하기로 함
 - 비자 전자 처리 시스템의 개발 및 이행에 대한 조언 제공, 국경 보안 및 자연인의 관리와 관련된 프로그램의 이행에 관련 경험, 규정 및 기술에 대한 정보 공유, 다자포럼에서의 협력

양허 주요내용 (부속서 8-라)

1) 전반적 개방 수준

▣ 양측 모두 한-ASEAN FTA 플러스 수준의 서비스 시장 개방 추진

- 우리측은 한-미, 한-EU FTA 서비스 분야 개방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개방
- 베트남측은 도시계획·조경, 기타기계·장비임대, 건설서비스 등 건설 관련 분야에서 한-아세안 FTA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
- ※ 베트남은 WTO 가입시(2007) 이미 법률, 교육, 의료를 포함한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 달성

▣ 향후 네거티브 방식의 재협상을 통해 자유화 수준 제고 가능성 기대

2) 베트남측 양허 수준

▣ 베트남의 도시계획·조경, 기타기계·장비임대, 건설서비스 분야 서비스시장 개방 내용

※ 참고: 한-ASEAN FTA 대비 베트남측 주요 추가 양허 내용

분야	반영 내용
도시계획·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 기업은 법인이어야 한다는 요건 삭제 ◦ 동 분야 기업에 고용된 외국인 건축사에게 요구되던 베트남 정부 발급 “전문자격 증명서” 요건 면제
기타기계·장비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에는 개방되어 있지 않던 동 분야에 대해, 외국인 지분 51% 제한의 합작회사(JV) 형태로 시장 개방 허용* * 베트남으로 들여오는 장비는 베트남의 국내법 규정과 합치 필요
건설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 기업은 법인이어야 한다는 요건 삭제



9. 투자

개요

▣ 투자자 권리 강화하고 투자 환경 개선할 수 있도록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09년 발효)과 한-베 양자투자보장협정('93년 발효) 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 자유화 및 투자 보호 규범에 합의

▣ 베트남이 기체결 FTA에서 유보 작성 경험이 없음을 감안, 한-베 FTA 발효 후 1년 내 유보를 완결토록 하는 Built-in 조항을 도입*

* 동 협정 발효 후 협의를 개시해 1년 내 타결하도록 규정

- 향후 동 유보 협상 시점에서 베트남이 유보 목록을 작성한 협정 중 최고 수준(the most advanced level)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

▣ 투자챕터는 3개의 절(Section) 및 관련 부속서로 구성

- 제1절(Section A)은 외국인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해 투자유치국 정부가 제공해야 하는 대우 및 예외를 규정
 -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협의 의무, 수용에 대한 보상, 송금 보장, 투자 관련 이행요건 부과 금지, 고위경영진에 대한 국적 제한 금지, 혜택의 부인, 비합치조치 등
- 제2절(Section B)은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에 대해 규정
- 제3절(Section C)은 투자챕터상 관련 용어 정의(definition)를 규정
- 부속서에서는 국제관습법, 간접수용에 대한 판단법리 및 단기 세이프가드 조치 등을 규정

외국인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한 대우 (제1절)

1) 투자챕터 적용 범위 (제9.1조)

■ 외국인투자자 및 적용대상투자와 관련된 당사국의 조치*

*당사국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비정부기관의 조치도 포함

- 협정 발효 전에 발생한 사건 및 행위, 발효 이전에 종료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소급효 배제)
- 서비스 투자(상업적 주재를 통한 서비스)는 서비스챕터에서 규율하고,
비서비스 투자(1차 산업, 제조업)에 한해 투자챕터에서 규율
 - 다만, 서비스 투자에도 투자챕터상 투자 보호 규정을 적용하여 동등하게 보호

2)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제9.3조)

■ 외국인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해 동종 상황(like circumstances)에서 내국 투자 및 투자자 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 부여

- 진입단계의 투자(설립, 인수, 확장)에 대해서도 내국민대우를 보장토록 규정
- ※ 투자보호의 대상인 투자자(investor of a Party)의 범위에 투자를 시도하는
(is seeking to make an investment) 자도 포함

3) 최혜국(MFN) 대우 협의 의무 (제9.4조)

■ 상대국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해 동종 상황(like circumstances)에서 제3국의 투자 및 투자자 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하기 위해 협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

4) 대우의 기준 (제9.5조)

▣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국제관습법(customary international law)에 따른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및 충분한 보호와 안전을 보장

-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는 적법절차(due process) 원칙에 따라 형사, 민사, 행정 심판 절차상 정의를 부인하지 않을 의무를 포함
- 충분한 보호와 안전은 국제관습법에 따라 요구되는 수준의 경찰보호를 의미

5) 수용 및 보상 (제9.7조)

▣ 정부는 ① 공공 목적을 위해 ② 비차별적인 방법으로 ③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④ 신속적절효과적으로 수용 당시의 공정한 시장가격(fair market value)으로 보상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자의 재산을 수용 또는 국유화 가능

- 또한, 직접수용과 동등한 정도로(equivalent) 재산권을 침해하는 간접수용*에 대해서도 정당한 보상을 제공할 것을 규정

* “간접수용” 이란 직접수용처럼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의 재산권을 박탈, 국유화하는 것은 아니라, 특정 정부 조치로 인하여 투자자가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투자의 가치가 직접 수용과 동등한 정도로 박탈되는 경우를 말하며, 간접수용의 판단 법리 및 예외적 상황 등에 대해서는 수용 부속서에서 규정

6) 송금 (제9.8조)

▣ 출자금, 이윤, 자본이득, 배당, 이자, 로열티 등을 자유롭게, 그리고 지체 없이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규정

- 다만, 한–아세안 FTA에서와 같이 파산, 예금자 보호, 주식 등의 거래 이전, 형법의 적용, 규제당국의 법집행으로서 금융기록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의 결정을 따르기 위한 경우, 사회보장, 과세 등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

※ 송금보장 조항의 예외로서 외환위기 시 자본거래 통제 등 단기 세이프가드 조치를 인정(부속서에서 규정)

7) 이행요건 (제9.9조)

▣ 외국인투자의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영업, 운영 등에 관하여 아래 특정 이행의무의 부과를 금지

- 일정수준 국내 재료 사용 달성, 일정 수준 수출, 국내상품 사용, 수출과 수입간의 연계, 수출과 판매간의 연계, 기술이전, 특정지역으로의 독점공급 등 7가지
- 다만, 일정 수준의 수출 의무와 기술이전 의무 등은 인센티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부과 가능

8)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 (제9.10조)

▣ 외국투자기업의 고위경영진 임명에 국적요건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

▣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산하 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에 대한 국적요건은 부과 가능

- 다만, 그러한 요건이 외국인 투자의 해당 투자 기업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아야 함

9) 혜택의 부인 (제9.11조)

- 제3국인 또는 혜택부인 당사국이 소유하고 타당사국 내에서 실질적으로 영업하지 않는 타 당사국 기업(이른바 paper company)에 대해 동 협정상 혜택을 부인하는 것이 가능함을 규정

10) 비합치 조치 (제9.12조)

- 부속서 I 및 부속서 II 유보 목록에 기재하는 경우에는 ① 내국민대우, ② 최혜국대우, ③ 이행요건, ④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의무가 적용되지 않음
- 다만, 베트남이 기체결 FTA에서 유보를 작성한 경험이 없음을 감안, 협정 발효 후 1년 내 유보를 완결토록 하는 Built-in 조항을 도입
 - 향후 동 유보 협상 시점에서 베트남이 유보 목록을 작성한 협정 중 최고 수준(the most advanced level)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

투자자 - 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 (제2절)

1) 투자자 - 국가간 분쟁해결절차 개요

-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를 13개 조항의 별도의 절(Section)로 규율함으로써, 한-아세안 FTA보다 절차를 체계화하여 투자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

- 투자유치국 정부가 제1절의 협정상 주요 의무를 위배하여 외국인 투자 및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 국제중재는 3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Tribunal)에서 심리

- 투자자와 투자 유치국 정부가 각각 1인을 지명하고, 의장중재인이 되는 나머지 1인은 분쟁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해 선임
- 단, 중재 제기 후 90일 이내에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지 않는 경우 임명권자(Appointing Authority)가 제3국 국적을 가진 자를 의장중재인으로 선임

▣ 이용 가능한 중재 기관·절차

- ICSID(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 World Bank 산하 기구로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159개 회원국에게 투자-국가 간 분쟁절차를 제공
- UNCITRAL(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 국제 상거래법 제정을 위한 UN 산하 전문위원회로서 국제 중재 절차 및 규칙을 규정
- 분쟁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제3의 중재기관 또는 중재규칙

2) 국제 중재와 국내 제소 절차와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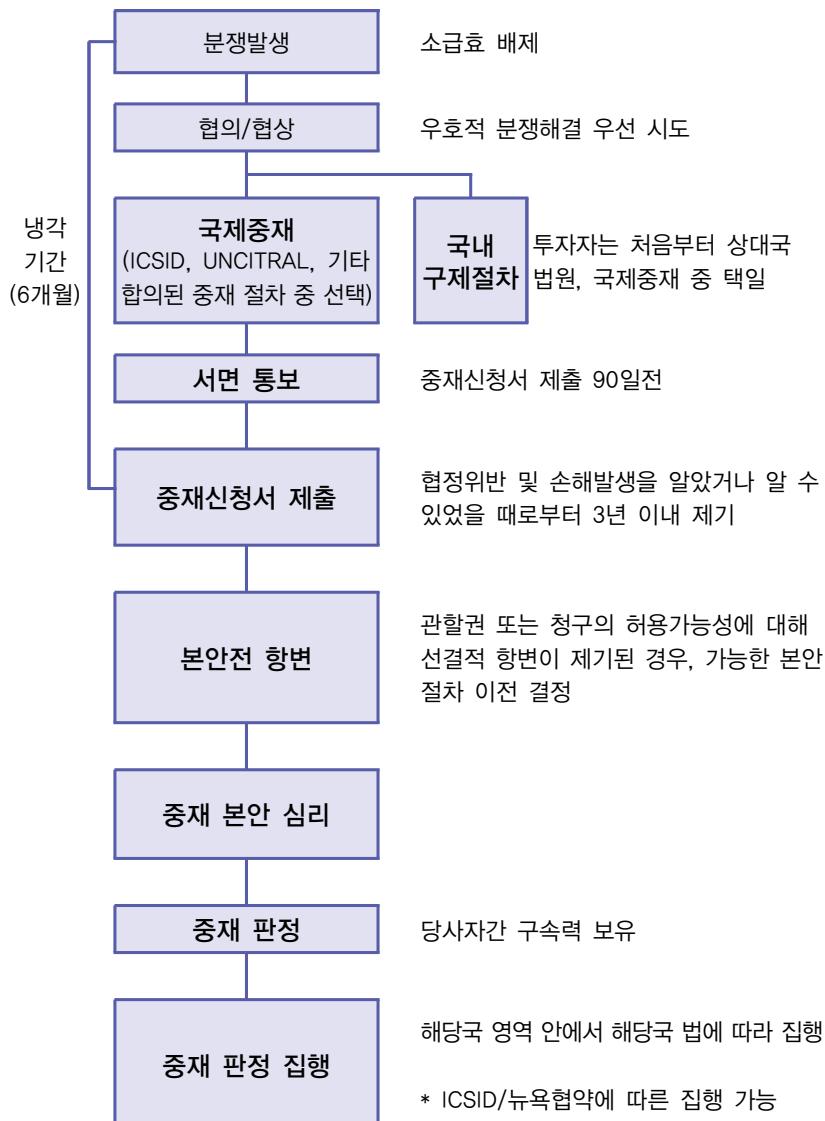
▣ 상대국의 법원 또는 국제중재 절차 제소 중 하나를 선택한 후에는 다른 절차 제소가 불가능 (“fork in the road”)

3) 중재판정

■ 중재판정은 단심제로서 확정력을 가짐(binding and final)

- 중재판정은 금전적 손해와 적용가능한 이자 및 재산의 원상회복만으로 한정
-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 명령은 불가

〈 ISD 절차 개요 〉



정의 (제3절)

▣ 투자

- 투자자가 소유 또는 통제하며, 자본 또는 기타 자원의 약속, 이득 또는 이윤에 대한 기대, 위험의 감수 등과 같은 투자의 성격을 가진 모든 자산으로서, 아래 형태를 포함
 - ① 기업
 - ② 주식, 증권, 기타 기업의 지분참여 형태
 - ③ 채권, 회사채, 대부 및 기타 채무증서
 - ④ 완성품 인도, 건설, 경영, 생산, 양허, 수익배분, 그리고 이와 유사한 계약
 - ⑤ 지식재산권
 - ⑥ 기타 유형 또는 무형, 동산 또는 부동산, 그리고 리스, 저당권, 유치권, 질권 등 관련 재산권
- 그러나, 본 협정의 목적상 투자의 성격을 가지는 대부분이 아니라면 순수하게 상업적 거래로 인한 대금청구권은 투자가 아님을 규정

▣ 투자자

- 일방의 국가, 국민 또는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영토 내에서 투자하고자 시도하거나, 투자 중이거나, 이미 투자한 경우를 의미

부속서

▣ 수용 부속서 – 간접수용 정의 및 판단법리 (부속서 9-나)

- 직접수용 및 간접수용의 정의와 간접수용의 판단법리를 규정하여 간접수용의 인정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시

- 간접수용 해당 여부의 판단은 ① 정부행위의 경제적 영향, ② 정부행위가 명백하고 합리적인 투자자 기대이익을 침해하는 정도, ③ 정부행위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결정
- 상기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의 정책은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우리 정부의 부동산가격안정화정책을 예시로 명시함

▣ 송금 부속서 – 단기 세이프가드 (부속서 9-다)

- 심각한 국제수지악화 및 외환위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 외국환거래를 통제하는 단기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규정
- 단기 세이프가드 발동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이며, 세이프가드 발동 유발 상황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초과하지 않고, 상황이 개선되는 경우 점진적으로 폐지

*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1년 이상으로 연장 가능하나, IMF 협정상 관련 조항에 합치하여야 함

10. 전자상거래

개요

■ 베트남 최초로 양자 FTA에서 전자상거래 챕터를 구성하여, 전자서명, 종이 없는 무역, 온라인 소비자 보호 등 전자상거래 촉진 기반 마련

- 한-미 FTA와 비교시에도 디지털제품의 비차별 대우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조항에서 한-미 FTA 수준의 규범 확보

■ 협정문은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실체적 조항(7개)과 동 챕터의 의의 및 관련 정의를 규정하는 형식적 조항(2개)으로 구성

※ 한-미 FTA의 경우 총 9개 조항(실체 6개, 형식 3개)으로 구성

- (실체적 조항) 전자적으로 전송된 내용에 대한 무관세,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국내 규제의 틀, 온라인 소비자 보호, 온라인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종이 없는 무역, 협력 등을 규정
- (형식적 조항) 일반규정 및 정의조항

상세 내용

1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제10.2조)

■ 전자적 전송(electronic transmissions) 즉,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내용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

- 다만, 내국세 또는 그 밖의 국내 부과금은 부과 가능

- ※ 전자적 전송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관세 부과가 불가능하고 국제적으로 무관세 관행이 유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무관세를 적용
 - 1998년 WTO 각료회의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WTO 각료 선언”을 채택하여 온라인 거래에 대한 무관세 관행을 한시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이후 이러한 결정의 효력을 연장하고 있음

2)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제10.3조)

- ▣ 전자거래(electronic transactions) 당사자들이 전자인증 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령을 각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합의

3) 온라인 소비자 보호 노력 (제10.5조)

- ▣ 소비자를 기만적인 상업적 관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합의

4) 개인정보 보호 노력 (제10.6조)

- ▣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법령을 채택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전자상거래 개인정보 보호 기준의 발전에서 관련 국제 기준의 중요성을 인정

5) 종이 없는 무역 행정 (제10.7조)

- ▣ 전자적 형태의 무역 행정 문서를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그 법적 효력을 종이문서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해 노력

11. 경쟁

개요

- 경쟁법 집행의 일반 원칙 준수, 공기업 및 국가 독점 기업에 대한 경쟁법 적용 등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한 실체적 내용 포함
- 경쟁당국간 통보, 조정, 협의, 정보교환 등 높은 수준의 협력 수단을 마련하여 양국간 경쟁 관련 사안에 대해 효율적인 대처 가능

상세내용

① 법 집행원칙 및 이행 (제11.2조 및 제11.3조)

- 양국은 경쟁법 및 경쟁 당국을 유지하며, 경쟁법과 그 이행은 투명성 · 시의적절성 · 비차별성 · 절차적 공정성 원칙에 합치되어야 함
 - (투명성) 경쟁법 관련 규정 및 경쟁법 적용 면제 사항의 공개, 경쟁법 위반에 대한 최종 결정문은 결정의 근거와 법률적 분석을 적시하여 관련자에 서면 송부, 상대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자국 경쟁 정책 및 관행에 대한 공공 정보 제공
 - (절차적 공정성) 청문회 피심인에 의견 진술권 · 증거 제출권 제공, 경쟁법 위반에 대한 제재 또는 구제 조치에 대해 피심인의 재심 청구권 · 제소권 보장

2 경쟁법의 적용 (제11.4조)

■ 경제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기업(공기업 포함)에 대해 경쟁법 적용

- 특히, 공적 업무 수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 국가 독점 분야의 기업이 반경쟁적 행위를 유지하거나 도입하지 않도록 보장

3 협력 (제11.5조)

■ 양국은 효율적인 경쟁법 집행을 위해, 자국 경쟁법 및 중요한 이익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가용자원의 범위 내 통보·조정을 통해 협력

- (통보) 일방 당사국의 경쟁법 집행이 타방 당사국의 중요한 이익을 침해할 경우, 그 집행 내용을 타방 당사국에 통보
- (조정) 일방 당사국의 중요한 이익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 특정 사건에 대해 타방 당사국의 경쟁당국에 조정 요청 가능

4 정보의 교환 (제11.6조) 및 비밀 유지 (제11.7조)

■ 양국은 경쟁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상대국에 비밀이 아닌 정보 제공

■ 양국은 경쟁당국이 비밀로 제공한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며, 정보를 제공한 경쟁당국에 의해 승인받지 않은 주체에 그러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

5) 협의 (제11.8조)

▣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또는 특정 사안을 다루기 위해 양국간 협의

- 단, 협의는 경쟁법을 채택·유지·집행하는 각 당사국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없음

6) 기술지원 (제11.9조)

▣ 양국은 가용자원 범위 내 경쟁분야에 대해 기술지원을 제공

- 경쟁법 및 정책 집행 관련 경험 및 정보의 교환, 공무원의 훈련 목적 교환 및 경쟁 주창 프로그램 참여, 경쟁 주창 및 경쟁문화 증진과 관련된 활동 정보 및 경험 교환 등

7) 분쟁해결 (제11.10조)

▣ 동 챕터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FTA 협정상의 분쟁해결 절차 배제



12. 지식재산권

개요

- WTO 지재권 협정(TRIPS) 수준을 상회하는 조항 등을 통해 지재권을 폭넓게 보호하는 한편, 높은 수준의 집행 절차를 규정하여 베트남 내 우리 권리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권리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상세내용

1) 입체상표 (제12.5조 제1항)

- 도형적인 요소나 상품의 형상 또는 그의 포장의 형상으로 구성 된 표지*도 상표로서 등록 가능토록 규정

* 예시: 스마트폰의 외형 디자인, 바나나 맛 우유의 병 디자인

2) 상표등록권자의 권리 (제12.5조 제2항)

- 상표 등록권자는 제3자가 ▽등록상표에 관한 상품 ·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 서비스에 대하여 ▽상표권자의 승낙 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 유사한 표지를 ▽거래의 과정에서 ▽혼동 가능성을 초래하는 경우, 표지사용을 금지할 배타적 권리를 보유

- ▣ 등록상표와 동일한 표지를 등록상표에 관한 상품·서비스와 동일한 상품·서비스에 사용하는 경우,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

3 유명상표 보호 (제12.5조 제4~6항)

- ▣ 각 당사국이 유명상표 여부를 판단시 자국에 상표가 등록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
 - ▣ ▽유명상표와 혼동을 일으키기 쉬운 상표를 ▽동일·유사하지 않은 상품·서비스에 사용하여 ▽유명상표권자와 그 상품·서비스 간에 연관성을 나타내고, ▽그러한 사용으로 상표권자의 이익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동 유명상표의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등록거절·등록취소·사용금지
- * 기존 파리조약 제6조의2는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해 유명상표와 혼동을 일으키기 쉬운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보호가 가능하도록 규정
- ▣ ①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②해당 유명상표에 관한 상품·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서비스에 사용하여 ③선행 유명 상표와 혼동을 일으키거나, 상표권자와의 관련성을 오인 또는 기만하거나, 명성을 손상할 가능성이 있을 때, 그 상표의 등록거절·등록취소·사용금지

4 상표출원 절차 개선 (제12.5조 제7~8항)

- ▣ 상표 출원에 대해서 ▽거절 이유의 서면 통보, ▽거절에 대해 출원인의 의견 제출 기회 보장, ▽최종 거절에 대해서 사법적으로 불복청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이의신청 절차를 제공하여 합리적 출원 및 등록 절차 보장

5) 부정경쟁행위로부터의 보호 (제12.6조)

▣ 산업·상업상 정직한 관행에 반하는 아래의 행위는 금지됨

- 경쟁자의 시설, 상품 혹은 산업·상업 활동과 혼동을 야기하는 행위
- 경쟁자의 시설, 상품 혹은 산업·상업 활동을 불신시키는 성격의 거짓 주장
- 상품의 성격, 제조 과정, 특성, 목적적합성 혹은 수량 등에 대해 대중을 오인케 할 가능성이 있는 표시 혹은 주장
-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각 당사국의 유명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사용, 취득 혹은 사용권을 보유하는 행위

6) 특히 대상 제외 범위 (제12.7조 제2항)

▣ 아래 사항은 특히 대상에서 제외 가능

- 인간·동·식물의 생명·건강 보호, 환경 피해 방지,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 보호 등을 위해 상업적 이용의 금지가 필요한 발명
- 인간 또는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치료·외과적 방법
- 미생물을 제외한 동·식물, 그리고 이들의 생산에 이용되는 본질적으로 생물적인 절차 및 미생물적인 절차

7) 특허 공지예외 요건 완화 (제12.7조 제4항)

- 특허 출원 이전에 공개(공지)된 발명은 신규성을 상실한 발명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특허출원인 본인 혹은 그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이 공지하거나 ▽특허출원인의 허락 없이 공지된 경우, 특허출원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특허출원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외를 인정함

8) 특허 우선심사 제도 (제12.7조 제5항)

- 특허 우선심사제도 도입을 가능하도록 하여, 심사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출원인의 불편을 해소할 제도 도입 기반 마련

9) 저작권·저작인접권자의 배타적 복제권 (제12.8조 제1항)

-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각각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신호의 모든 방식 및 형태로의 복제 관련 배타적 권리 부여
 - 복제의 형태·매체 불문, 모든 복제 관련 배타적 권리 행사 가능
 - 특히, 실연자도 음반 복제 관련 배타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됨
- * 사용료 수입, 민사배상 청구 등 (현재 베트남에서 실연자는 배타적 권리 행사 불가)

10) 실연자·음반제작자의 방송보상청구권 (제12.8조 제2항)

- 상업적인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을 방송으로 직간접적으로 이용할 경우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보상청구권 부여

11 권리 집중관리단체 (제12.8조 제3~4항)

- ▣ 저작권·저작인접권 집중관리단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양국간 콘텐츠의 용이한 접근·전달과 로열티의 상호 전송을 보장하기 위해 양국의 집중관리단체간 협정 체결 원활화를 위해 노력

12 암호화된 위성신호 보호 (제12.8조 제5항)

- ▣ 암호화된 프로그램을 전달하는 위성 신호와 관련한 아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행정 또는 형사 구제절차 제공

- 기기 또는 시스템이 암호화된 위성 신호를 합법적인 배포자의 허락 없이 해독하는 행위를 지원하는 데에 기본적으로 이용된다는 것을 알거나 알만한 이유가 있으면서, 그 기기·시스템을 제조·조립·변경·수출입·판매·리스 또는 달리 배포하는 행위
- 합법적인 신호 배포자의 허락 없이 해독된 위성 신호임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신호를 수신하거나 재배포하는 행위

13 저작권자·저작인접권자 추정 원칙 (제12.9조 제2항)

- ▣ 민사, 형사, 그리고 적용이 가능하다면 행정 절차에서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로 성명이 표시된 자를 권리자로 추정

14 법정 비용·수수료, 변호사 비용 패소자 부담 원칙 (제12.9조 제4항)

- ▣ 저작권, 저작인접권, 특허권 및 상표 침해 민사소송의 종결 시에

패소자가 승소자의 법정 비용수수료,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를 부담토록 함

15) 법정손해배상 제도 (제12.9조 제5항)

- ▣ 저작권·저작인접권(음반, 실연) 침해 및 상표위조 관련 민사 소송에서는 권리자가 구체적 실손해배상 대신 법령에 미리 규정된 액수의 손해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
- 법정손해배상액은 침해로부터 야기된 피해를 권리자에게 충분히 보상할 금액으로 설정되어야 함

참고: 양국 국내법에 규정된 법정손해배상액

- 우리나라
 - 저작권 침해 : 1천만원 이하(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침해한 경우 5천만원 이하)
 - 상표권 침해 : 5천만원 이하
- 베트남
 - 모든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5억 동(약2,600만원)

16) 침해물품 압류 (제12.9조 제6항)

- ▣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 및 상표 위조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침해 물품, 침해 행위와 관련된 재료나 도구에 대한 압류 권한을 사법당국에 부여
- 상표 위조의 경우, 침해의 입증에 필요한 문서 증거의 압류 권한도 규정

17) 비밀유지명령 위반시 제재 (제12.9조 제7항)

- ▣ 민사재판 당사자, 변호인, 전문가 및 법원의 관할권 적용을 받는 사람이 재판과정에서 생성되거나 교환된 비밀정보와 관련된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이들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법원에 부여

18) 잠정조치 (제12.9조 제9~10항)

- ▣ 집행당국이 일방의 잠정조치 요청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도록 당사국에게 의무를 부과하였고,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침해가 임박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가용한 모든 증거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사법기관에 부여
- ▣ 피고인 보호 및 권리남용 방지 등을 위해, 합리적 수준의 담보 또는 보증 제공을 권리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도 법원에 부여

19) 권리자에게 통관보류 관련 정보 제공 (제12.9조 제12항)

- ▣ 관계당국이 지재권 침해 의심물품을 유치하거나 압류했을 때, 지재권 침해에 대한 지원을 신청한 권리자에게 관련 정보를 통지하여 통관보류 신청 기회를 제공

20) 세관에 압류된 침해물품의 폐기 (제12.9조 제13항)

- 세관에서 통관보류되고 불법복제품 또는 상표 위조품으로 판정되어 몰수된 물품은 폐기되거나 권리자에게 어떤 손해도 가지 않는 방식으로 상거래에서 제거되도록 규정
 - 상표위조 물품에 대해서는, 제품에 부착된 위조 상표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물품을 상거래로 반출할 수 없도록 규정

21) 인터넷상 반복침해 대책 (제12.9조 제15항)

- 각 당사국이 인터넷 상에서의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할 의무 규정

13. 경제협력

개요

▣ 경제협력의 기본원칙(제1조)을 규정하고, 개별 협력분야(제2조) 및 형태(제3조)를 세부 조항에 상세 명시

- 양국의 관심분야를 4가지 부문(산업, 농림수산업, 규정 및 절차, 기타)으로 구분하고 다양한 세부분야를 포괄하여 양국간 협력강화 계기 마련

상세내용

1 협력 분야 (제13.2조)

▣ 산업분야에서 자동차, 철강 및 금속, 석유화학, 전자, 기계, 섬유 · 직물, 유통 · 물류 등 산업 전반을 포괄

▣ 농림수산분야에서 농축산업, 수산 및 양식, 산림관리, 식품가공 등 협력을 규정

▣ 규정 및 절차에 있어서, 표준 및 기술규정, 관세행정절차, 원산지, 지적재산 등 협력을 규정하여 통상환경 개선에 기여

▣ 기타 중소기업정책, 통계, 공정경쟁, 인프라, 투자 등 그밖에 양측 경제협력 심화를 위해 필요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명시

2 협력 형태 (제13.3조)

- ▣ 분야별로 정보와 전문가의 교환, 제도의 개선, 발전전략의 수립, 기초연구, 공동 R&D, 무역·투자 촉진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 형태를 규정
- ▣ 특히, 표준 및 기술규정 관련 협력을 통해 우리 KS 인증을 받은 국산 자재가 베트남에서 추가적인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논의의 기틀을 마련

3 이행 (제13.4조)

- ▣ 경제협력의 이행을 위한 위원회 설립 및 이행약정 포함으로 이행의 효과성 제고를 도모
- ▣ 그 밖에, 문화서비스 관련 협력을 부속서에 규정함으로써, 향후 시청각, 관광,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강화 및 문화교류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

14. 투명성

1) 공표 (제14.1조)

- ▣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관한 국내법·규정·절차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판정을 신속히 공표
- ▣ 가능한 한도에서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제안된 조치를 사전에 공표하고 이해관계인과 상대국에게 의견제시 기회 보장

2) 정보의 제공 (제14.2조)

- ▣ 다른 쪽 당사국이 요청할 경우, 해당되는 조치(조치안 포함)와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이에 대한 질의에 응답

3) 행정절차 (제14.3조)

- ▣ 행정절차가 개시된 때에 가능한 경우 절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대국 이해관계인에게 절차의 성격 및 법적근거, 쟁점사항에 대해 통보하고, 최종 행정처분 이전에 의견개진 기회 제공

4 재심 및 불복청구 (제14.4조)

- 협정이 적용되는 사안과 관련된 행정처분의 신속한 재심 또는 정당한 경우 그 정정을 목적으로 사법 또는 행정 재판소/절차를 수립·유지

5 정의 (제14.5조)

-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판정이란 모든 인(人)과 사실상황에 적용되고 행위규범을 형성하는 행정판정 또는 해석을 의미

15. 분쟁해결

개요

- 분쟁해결절차는 “①당사국간 협의 → ②패널 설치 → ③패널보고서 제출 → ④패널보고서 이행 → ⑤보상 및 보복”의 순서로 진행
- 분쟁해결절차의 신속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 마련
 - 협의, 중재패널, 이행, 보상 및 보복 등 분쟁해결의 모든 단계에서 구체적인 시한을 규정하여,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유도
※ ‘부패성 상품’ 등 긴급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단축 시한 적용
 - 패널 판정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패널보고서의 구속성을 명시하고 양허·기타의무 정지(보복) 절차를 규정
- 절차의 세부 규칙 및 중재패널 구성원의 의무 사항 등을 부속서 [절차규칙(부속서A), 행동규범(부속서B)]에 별도로 상세 규정

상세 내용

1 범위 (제15.2조)

- 분쟁해결절차는 ‘①협정상 의무와의 불합치 조치, ②협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적용

15

법률
일정

- 제5장(SPS), 제11장(경쟁), 제13장(경제협력), 제8.19조(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에 기반한 재협상), 부속서 3-나(특정상품의 취급)에는 미적용

2) 분쟁해결포럼의 선택 (제15.3조)

- 분쟁이 동 협정과 WTO협정 또는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다른 협정에서 발생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분쟁해결 포럼 선택 가능
 - 분쟁해결 절차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패널의 설치를 요구하였거나 사안을 패널에 회부한 경우, 다른 절차의 이용 불허

3) 협의 (제15.3조)

- 서면으로 된 협의요청에 대해 피소 당사국은 10일 이내에 응답, 30일 (긴급사안 10일)이내 피소 당사국 내에서 협의 개시
 - 사안의 검토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정보의 비밀 취급 의무

4) 주선, 조정 및 중개 (제15.5조)

- 분쟁해결의 대안적 수단으로 양 당사국은 주선, 조정, 중개를 이용 할 수 있으며, 관련 절차 및 양 당사국의 입장은 비공개로 유지

5) 중재패널 (제15.6조~제15.12조)

■ 협의 요청일부터 30일(긴급사안 15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60일(긴급사안 30일) 이내 협의를 통해 사안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 제소국은 서면으로 패널설치 요청 가능(제15.6조)

- 중재패널은 3인으로 구성되며 설치일은 제3중재인의 임명일(제15.8조)
 - 패널은 비공개 회의로 회합하며 중재패널의 심의 및 중재패널에 제출된 자료는 비밀로 취급(제15.9조)
- ※ 패널 절차의 기본적 사항은 제15.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보다 상세한 절차규칙은 부속서-가(중재절차 규칙)에 규정(제15.15조)

■ 패널은 중재패널의 설치일부터 90일 이내 잠정보고서를 제출하고 (제15.11조) 잠정보고서 제출일부터 30일 이내 최종보고서 제출(제15.12조)

※ ‘부파성 상품’ 등 긴급사안에 대해서는 절반의 기한 적용

패널 구성(제15.8조)

- 패널설치 요청 접수일(이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당사국이 각각 패널을 1인 임명하고, 패널의장 후보를 3명 제안
- 접수일 이후 45일 이내에 의장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양국은 7일 이내 회합하여 제출한 후보명부에서 추첨에 의해 결정

6) 최종보고서의 이행 (제15.13조)

■ 피소국은 패널의 판정을 즉시 또는 양 당사국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행할 의무를 부담

※ 최종보고서 제출일로부터 45일 이내 합리적인 기간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원 패널에 회부하여 합리적 기간 결정

- 불합치 제거 여부에 대해 미합의시 원 패널 회부 가능

7 불이행, 보상 및 양허 또는 그밖의 의무의 정지 (제15.14조)

- 피소국이 패널 판정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통보하지 못하거나, 이행이 실행 불가능하다고 통보하는 경우, 제소국 요청에 따라 보상협의 개시
- 제소 당사국은 보상 협의 요청일부터 20일 이내 보상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경우 피소 당사국에 대해 양허 또는 그밖의 의무의 적용을 정지하겠다는 의사 통보를 하고 통보 30일 이후 정지 가능
- 피소국은 양허 또는 그밖의 의무의 정지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동 사안의 검토를 위하여 중재패널 소집 가능

16. 예외

1) 일반적 예외 (제16.1조)

▣ GATT 제20조 및 GATS 제14조의 일반적 예외 적용

- GATT 제20조와 관련 주해 적용 챕터 : 제2장(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4장(통관 및 무역 원활화), 제5장(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제6장(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제7장(무역구제)
- GATS 제14조 적용 챕터 : 제8장(서비스 무역), 제9장(투자)

참고 : GATT 제20조/GATS 제14조상의 일반 예외조치

※ GATT 제20조상 예외조치

- 공중도덕 보호, 인간·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 금·은의 수출입, 고갈될 수 있는 천연자원의 보호, 역사·예술 유물의 보호, 공급부족 상품의 취득·유통에 필수적인 조치 등

※ GATT 제14조상 예외조치

- 공중도덕 보호 또는 공공질서 유지, 인간·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보호, 안전, 사기 행위의 방지, 사생활의 보호 등을 위한 조치

2) 안보상 예외 (제16.2조)

▣ 국가 안보상의 예외조치 허용

- 필수적 안보 이익에 반하는 정보의 비공개 가능

- 필수적 안보이익의 보호를 위한 조치 또는 국제평화 및 안보의 유지를 위한 UN현장상 의무 수행에 필요한 조치 가능
 - ※ 동 조치를 취하거나 종료할 경우 공동위원회에 가능한 한 완전히 통보할 의무

3) 과세 (제16.3조)

▣ 과세조치는 원칙적으로 협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협정과 여타 조세협약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조세협약이 우선

- 과세조치에 적용되는 조항 : 제16.1조(일반 예외) 제2항, 제2.2조(국내 조세 및 규범에 관한 내국민 대우), 제9.8조(송금) 제4항 아호
- 과세조치가 수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가 적용되나, ISD 회부전 권한있는 당국에 먼저 제기하고, 권한있는 당국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ISD 제소를 진행
 - ※ 동조 제6항은 과세조치의 수용 구성 여부 결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면서, “과세조치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음”을 명시

4) 정보공개 (제16.4조)

▣ 협정상 어떤 규정도 공개되면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공익에 반하거나, 특정 기업의 상업상 이익을 손상하는 비밀 정보의 제공 또는 접근 허용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음

17. 제도 및 최종규정

① 공동위원회 (제17.1조)

- ▣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베트남 산업무역부의 장관급 대표자 또는 그들이 지명하는 자가 공동의장으로 하는 공동위원회 설치
- ▣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협정에 의해 설치된 모든 위원회 및 작업반의 업무를 감독하고, 협정상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노력
- ▣ 공동위원회는 위원회 및 작업반을 설치하고, 협정 개정을 권고하고, 협정의 규정에 대한 해석을 채택할 수 있음

② 공동위원회의 절차 (제17.2조)

- ▣ 양 당사국은 매년 정기 회기로 회합하고, 한 쪽 당사국의 요청 후 30일 이내 특별 회기로 회합
- ▣ 공동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상호 합의에 의해 이루어짐

③ 위원회 및 작업반 (제17.3조)

- ▣ 공동위원회는 산하에 위원회 및 작업반을 설치·해산할 수 있음

- ▣ 위원회 및 작업반의 구성, 회합의 빈도 및 기능은 협정에 규정되거나 공동위원회에서 결정
- ▣ 위원회 및 작업반은 회합에 충분히 앞서 일정 및 의제를 공동위원회에 알리고, 공동위원회의 정기 회합에서 자신의 활동을 보고

4) 접촉선 (제17.4조)

- ▣ 양 당사국은 협정 적용 사안에 대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접촉선을 지정하고 접촉선 변동 사항에 대해 상호 통보
- ※ 접촉선 :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그 승계기관
(베트남) 산업무역부 또는 그 승계기관

5) 개정 (제17.5조)

- ▣ 양 당사국은 협정 개정에 합의할 수 있으며, 개정은 양 당사국이 필요한 모든 국내적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한 후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

6) 세계무역기구협정의 개정 (제17.6조)

- ▣ 이 협정에 통합된 WTO협정의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양 당사국은 관련 규정의 개정을 검토하기 위해 협의

7) 부속서, 부록 및 각주 (제17.7조)

- ▣ 협정문의 부속서(Annex), 부록(Appendix) 및 각주(Footnotes)는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 구성

8) 발효 (제17.8조)

- ▣ 협정은 양 당사국이 필요한 모든 국내적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지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한 날의 다음 두 번째 달의 첫째 날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한 다른 날 발효

9) 기간 (제17.9조)

- ▣ 이 협정은 무기한 효력이 있으며, 어느 한쪽 당사국이 협정 폐기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면 6개월 이후 효력 발생

10) 정본 (제17.10조)

- ▣ 한국어본, 베트남어본 및 영어본은 동등한 정본이나, 불일치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

한·베트남 FTA 상세설명자료

발행일 | 2015년 5월

발 행 | 산업통상자원부 FTA협상총괄과
Tel. (044)203-5751

인 쇄 | 명신사 Tel. (044)862-2246